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상정된 안건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8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8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8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8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8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8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8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8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8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8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8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8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8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8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28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8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9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9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9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9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9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9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9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29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29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29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29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29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2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29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29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29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29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29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29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29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29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29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29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2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2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29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29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29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2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29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9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29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29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29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9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0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0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0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0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0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0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0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0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30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30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30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30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30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30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0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3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30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3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30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30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30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30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30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30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3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3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30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3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30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3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30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30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30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3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3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3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31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3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31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31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3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3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3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3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3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31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31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31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3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3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3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31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3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3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3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31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31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31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3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3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3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3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3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31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3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31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3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3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31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31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3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32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32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32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3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32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3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3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32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32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32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32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3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32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32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32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32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32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32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32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3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32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32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32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3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32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3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3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3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32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32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3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3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3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3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3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33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3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33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33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3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33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3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3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33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33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3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3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3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3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3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3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3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3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3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3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33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3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33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3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3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3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33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3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3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3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3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3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3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3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4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4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4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4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4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4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4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4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34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4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4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4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4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4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4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4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4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4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4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4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4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5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5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5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5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5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5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5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5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5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5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5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35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5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5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5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5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5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5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5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5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5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5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5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5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5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6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6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6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6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6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6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6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6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6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6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6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6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6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6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6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6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6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6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6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6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6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6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6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6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6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6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6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6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6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6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6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7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7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7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7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7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7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7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7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7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7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7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7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7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7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7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7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7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7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7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7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7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7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7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7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7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7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7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7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7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7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7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7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7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8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8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8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8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8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8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8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8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8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8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8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8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8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8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8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8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38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3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38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38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38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38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38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38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38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38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38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39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39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39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39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39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3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39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39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39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3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39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39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39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39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39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39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39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39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39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39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39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39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39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39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39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3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39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39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39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39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39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39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3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3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39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39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39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39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39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0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0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0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0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0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0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0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0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0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0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0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0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0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0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0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0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0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0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0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0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0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0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0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0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0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0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0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0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0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0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0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0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0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0
4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41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1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1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1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1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1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1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1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1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1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1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1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1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41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41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41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41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41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41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41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41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41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41
5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41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힘을 내면 일단 마무리…… 1회독이 끝날 것 같고요.

내일 소소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를 내서 13권과 14권을 마치면 15권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 회기가 아니라 11월 중에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12월 또는 1월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논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3·14권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10시03분)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13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첫 번째 안건은 198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종료되는 요건인 대상 주식의 처분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이연을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지주회사 설립 장려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관련 세법 개정을 하면서 처분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하급심 판례에서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도 이 내용은 차규근 의원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물출자가 되고 나면 지주회사가 이것을 처분할 때 과세가 그동안 미뤄졌다가 작동이 되게 되는데 상속했을 때 이게 과연 처분인가가 이슈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예외로 해 주면 계속 과세이연이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일관되게 처분의 범위 내에 상속도 있다,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조문에 명확화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차제에 이렇게 처분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저희들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차규근 의원님 안으로 왔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궁금합니다. 여당이 아니잖아요, 또. 어찌 그럴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게.

○천하람 위원 차규근 의원님이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현행 조문으로도 처분에는 당연히 상속도 포함된다고……

○소위원장 박수영 물론인데 그다음에 하급심 판결이 났잖아요. 났으면 기재부에서 바로 개정안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차규근 의원님보다 더 느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판결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게 더 상급심까지 가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느냐 그런 것을 조금 더 기다려 본 점도 있었고 그런데 상급심까지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세심판원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이 나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이것을 처분에서 상속을 빼내고 자꾸 나와서 더 이상 저희가 기다렸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문 명확화 차원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차규근 의원님이 내서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똑같은 것을 또 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소위원장 박수영 차규근 의원님의 성실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합의된 걸로 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로 하고 통과.

그다음에 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0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축사용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축사용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는 현행 비과세 특례 요건을 달리 정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니다.

20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특례가 8년 이상 자경 축산농가에 대해서 자발적인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차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부분은 현행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처럼 기본적으로는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경 8년 이상 하신 분이 폐업할 때 도와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상속비 내는 그것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자고 해 봤는데 대통령령에서 풀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8년을 그대로 유지할 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속을 받고 1년 이상 축산을 하면 아버님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자경이 그대로 완전히 되는데 아예 안한 분이 이것을 받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예컨대 아버님이 6년을 했다, 돌아가셨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1년만 더하면 8년이 아니고 7년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차관님 말씀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년 이상 하면 아버님의 기간을 합산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년 이상, 그러니까 아드님이 2년 하면 아버님 7년 한 것하고 합산해서 9년이 카운트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기만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년 이상만 하면.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 차관님,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면 예컨대 8년 이상 아버님이 하셨고 상속은 받았는데 나는 축산 안 하겠다, 그런 분한테 이 혜택을 안 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취지 자체가 축사용지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일하고 있다가 상속받았는데 1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해 줄게,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취지 자체가 폐업을 촉진하는 거면 8년을 이미 아버님이 하신 경우에 이것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요 그 취득가액이 아버님 취득가액이 아니고 물려받을 때 취득가액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어서 바로 팔아 버리면 가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끌고 있다가 마음을 바꾸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조세 목적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세수를 올린다는 측

면에서는. 그러나 방금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게 축산농가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8년 한 아버지 것을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자녀에게도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은 좀 적게 건더라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상속받을 때 취득가액이 변합니다. 상속재산이 당시 가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바로 팔면 시가 차액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소위원장 박수영**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겁니다, 이 조문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게 양도소득세액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바로 해 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의사가 없어서 바로 팔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특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렇게 바로 팔면, 사실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걸로 인한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8년만 채우면 자식이 물려받아도…… 아버님이 6년 했다면 2년 더해서 팔면 그 2년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8년 채웠으니까 그것조차도 부담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인데요. 지금 들어오셔서 가지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하실 말씀, 설명을 아마 잘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차관님이 간단하게 한번 더, 발의하신 위원님 오셨으니까 요약해 주세요.

○**윤영석 위원**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이상 축산을 하신 분이 폐업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인데요. 상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만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1년 이상 계속 축산을 하면 아버님의 자정기간을 합산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축산을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상속받자마자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을 때 재산으로 가액이 수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다시 팔면 사실 소득세가 없는 거지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 이 제도를 굳이 둔다면…… 사실은 상속을 받고 오랜 시간 흘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파는 것까지 하는 건 좀 과한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게 지금 비슷한 경우에 자경농지나 자경산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자경농지나 자경산지.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자경농지는 8년 요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 8년 요건입니다.

○**윤영석 위원** 동일한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동일합니다.

○**윤영석 위원** 동일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207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특례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특례를 허용하고 있고요. 이종욱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 지역 외에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대상지역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그리고 209페이지에는 최근에 새롭게 도입이 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을 정리했고,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음영 부분의 9개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 중심의 건축시장 활성화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례 대상지역과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서 대상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안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안은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감소지역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미리 챙겨서 관심을 가질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리스트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곳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종욱 의원님 안 경우에는 범위가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광역시랑 세종시 뺀 전 지역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 있는 지방을 다 포함해 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도걸 의원님 안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인구감소관심지역 9개만 하겠다, 거기에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기초단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제 지역구인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전체가 광역시로서 인구감소지역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 안 하고 감소관심지역이라는 데만 한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은 안 하고 관심지역만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감소지역 플러스 관심지역까지 추가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소는 이미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광역시는 안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부산하고 대구는 작년에 뺀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제외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관심지역과 감소지역이 같이 들어 있는데 별도의 요건으로 광역시는 빠지고 수도권 안에서는 접경지역만 들어가고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우선, 정일영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있고, 동두천도 수도권이지만 불구하고 관심지역에 들어 있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니지만 대구와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작년에 뺀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감소지역 지정 현황 보면 인천 안에서 동구나 강화·옹진은 인구가 주는 지역이에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에 쭉쭉 늘어나는 반면에 이 지역은 인천에서 감소하는 지역이라 따로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되어도 광역시는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재 감소지역도 제외하고 있어 같은 취지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서 보면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구별로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도 남구, 서구 돼 있는데 생활권역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남구나 서구나 옆에 있는 구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광역시 내에서 구 단위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만 혜택을 주고 하는 게 정책적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취지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좀 더 어려운 데 집중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거랑 같이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갈 것 같아서 좀 더 어려운 쪽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게 광역시 같이 동일 생활권역으로 묶여 있는 내에서 하나의 자치구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정책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장님도 아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광역시라고 해서 혜택이 없고 광역시 내에서 이렇게 구 단위별로 하는 게, 광역시는 여러 가지 시정 같은 것들을 구 단위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 단위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는 겁니

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대구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인구감소지역 자체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 기초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한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행안부랑 같이 얘기해서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광역시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감소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도 포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같은 광역 레벨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다…… 그러면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데가 다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충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곳이 다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기초단체별로, 예를 들자면 전북 같은 경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주시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결국 광역시에 상응하는 지방의 그것은 도 단위지 않습니까. 같은 레벨로 본다면 아마 전국이 다 인구감소지역일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오해를 많이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도봉구인데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저희가 38만이었다가 지금 3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노원구가 한 오십몇 만이었다가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1100만 명 넘었다가 지금 9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저는 그렇다고 수도권도 하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지점이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 발상은 지방의 군 단위에서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단위로 죽 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수도권 안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책의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지방소멸에 대한 절대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목표가 이걸로 다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가구 2주택을 한다든지 농가주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유인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사안의 성격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은 수도권 제외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기형 위원** 당연히 수도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일영 위원님 옆에 계신데 정일영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오기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봉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드리는데 하여간 도봉구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우선 질문, 잘 몰라서……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하고 개념은 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확연한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정요건하고 지정했을 때 정부의 지원 내용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 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고령인구 비율, 인구감소율, 출생률, 재정여건 등 여러 지표를 종합 검토해서……

○정일영 위원 실장님, 그건 다 아는데 2개의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그게 인구감소지역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못 미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20% 내를 관심지역으로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 감소지역의 20% 범위 내에서 우려가 되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까지 안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우려가 있어서, 무슨 조건의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요인이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이걸 갖고 지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내에서.

○정일영 위원 그게 관심지역에도 똑같이 있어요. 감소지역에도 똑같이 있고 관심지역에도 갖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제 생각에는, 내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죽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끊고 난 나머지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고른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참 애매한 답변이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다음에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 효과 이런 것도 똑같아요, 관심지역이나 감소지역이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 무슨 차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그래서 지방 주택 살 때 혜택 주는 것을 감소만 주다가 이번에 관심까지 가자는 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감소만 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것이, 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이 똑같냐는 얘기지. 이번에는 관심지역을 포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길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 세제, 행정특례 제도들이 죽 정리가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관심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세제개편안 만들 때는 관심지역까지도 좀 더 포함을 하자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지정돼 있는 곳들은 관심지역도 들어가 있고 감소지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구 단위로는? 인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고 있

는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빠르게 늘고 있고 그것도 또 달라요. 같은 연수구인데 예를 들어서 연수갑이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는 줄고 있어. 저는 을인데 제 지역은 또 늘고 있어요. 이렇게 구마다도 또 다르고 시 안에서 또 달라요, 군·구별로. 여기 지정돼 있는 웅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군·구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두 번째 집을 감소지역에 소재한, 지금은 관심지역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감소지역, 관심지역에 소재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세금에 대한 특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전국의?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거라도? 그리고 기한은 2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1세대 1주택……

○**정일영 위원** 일어나서 누구인지 얘기하시고.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재산세제과장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 충족만 하면 다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주택이 기존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있으면……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든 같은 부산에 있든 인천에 있든 여기 해당되는 관심 지역에, 지금은 감소지역……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여전히 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처럼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감소 관심지역으로 되는 군·구별로 해 가지고 안도걸 의원안처럼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천하람 위원님은 어떠신지요?

○**천하람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같은 경우가 준공후미분양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부산도 지역별로 안 좋은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기 전에 아무리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인천 강화·웅진이 포함되듯이 부산, 대구의 최소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지정된 곳들에는 혜택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준공후미분양주택은 다음에 조금 더 논의가 되실 건데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비수도권이면 다 됩니다. 방금 말씀……

○천하람 위원 준공후미분양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준공후미분양을 말씀하셔서……

○천하람 위원 그러면 그 논점을 빼더라도 일단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관심지역에 비해서 감소지역이 더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물론 광역시라는 나름의 기준은 있지만 광역시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지정까지 된 지역들이 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부산,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더 어려운 데 수요가 좀 더 가게끔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걸 했을 때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이 지방에 가 보자고 할 텐데 아무래도 광역시를 배제할 때랑 광역시를 포함했을 때랑 진짜 어려운 데랑 차이가 나지 않을까?

○천하람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게 게다가 가격기준이 있잖아요. 4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천하람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산, 대구 안에서도 4억을 초과 안 할 정도면 포함해 준다고 해도 아주 고가의 부산, 대구의 좋은 집 사고 이럴 때 이 제도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걸 굳이 뺄 이유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아까 광역 중에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다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재산세제과장님, 광역 중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현재는 광역은 지정 안 합니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광역으로는 지정 안 하고 구 단위로……

○소위원장 박수영 광역을 지정했지요. 왜 안 해요. 광역……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광역시 내 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대구시는 광역인데도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광역 중에서 1번, 2번으로 지정됐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고 작년 심의할 때 그것 들어 있어 가지고 부산과 대구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끝까지 해서 소소위에서 제가 양보를 해서 부산, 대구를 뺐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작년의 안건에는 광역시로 부산, 대구가 들어와 있었던 말이에요. 그것 포함하냐 안 하냐 하다가 결국 제가 양보를 했는데 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대구 두 군데가 광역시 중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면 감소관심지역으로 이렇게 대거 확대하는 것보다 이미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같이 포함해 주는 게 좋을 것이고 또 4억 이하이기 때문에 해 줘도 그렇게 큰 영향 없을 텐데 실장님은 광역을 해 주면 수도권 빼고 전부 다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추정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기초단체별로 봤을 때 강원, 충북, 충남 이런 쪽은 기초단체가 훨씬 더 인구감소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광역단체를 했어도 그쪽이 당연히 인구감소지역일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 아니지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작년 안건 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좀 더 확인하고, 기사 검색만 지금 해 봐도 돼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이라고 검색해도 행안부 발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소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잠깐만, 실무적인 것 하나만 여쭙보고……

○**소위원장 박수영** 말씀하세요.

○**김영환 위원** 재산세제과장님, 지금 과세특례 중에 양도소득 12억하고 종부세 12억 기본공제 이것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이런 내용들이 특례잖아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 일단 1가구 1주택자 이 조건에 맞아야 되고 추가로 신규로 얻은 주택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를 합산해서 12억을 맞추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원래 들고 있는 집……

○**김영환 위원** 원래 들고 있는 게 맞으면 그러면 얼마를 사더라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가격제한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가격제한은 얼마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공시가격 4억이니까 시가로 하면 한 6억에서 7억쯤 될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는 것은 그냥 유령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갖고 있던 1가구 1주택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 더 사더라도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소소위 가져오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변경 및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과세특례 대상의 취득가액을 6억 원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범위에 규정을 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218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의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 1만 1965호에서 2025년 7월 말까지 2만 2000여 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률에서는 전용면적이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 법률로 올릴 것인지 등 법체계 일관성 측면에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시행령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시행령 내용은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각주 140번이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기준, 취득가액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 중에서 취득가액 6억 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특례로 미분양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기한을 1년 정도로 하시는 게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도걸 의원님이 제안한 1년 연장안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문제는 가액 부분을 추가로 더 말씀 주신 게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평균 분양가가 6억 원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억까지 상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가장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6억 이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장 상황을 간과하신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대구고 그다음 많은 데가 부산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가액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은, 대구가 아마 3700채쯤 되는 것 같고 부산도 한 3000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2700채 정도 됩니다.

○최은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준공후미분양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행해야지 그냥 전체 6억 이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가액을 한 9억 정도로 올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최은석 위원님, 일산으로 오세요. 3억~4억짜리가 켜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일산에 준공후미분양 있어요?

○최은석 위원 일산에 혹시……

○**김영환 위원** 우리 집이 5억도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위원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일단 연장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의 미분양 실태를 보면, 방금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태를 보면 최근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그런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주택평형이라도 6억 이상이 미분양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최근의 여러 가지 건축비 상향이라든지 인건비 상향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윤영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6억을 계속 고집하면서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인지 지금 자료도 안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분양가가 6억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은 현재 8억이고요, 대구도 한 8억 4000 정도 평균 분양가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양산 자료는 있습니까? 양산마저도 6억을 넘는다는 게 지금 윤영석 위원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세제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 미분양이 났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분양하려는 건설업체에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가격에 안 팔리고 오랫동안 있는데 악성 분양을 갖고 있다면 일정 부분 가격을 내려서 시장에서 팔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맞춰 주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혜택을 받는, 세제 혜택 때문에 영향이 될 수 있으니 이 중에서 6억 이하부터 먼저 미분양을 정리하자는 거고요. 7억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6억으로 내려서라도 팔아서…… 그게 결국에는 시장이 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선 김영환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발언하시고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렇게 평소에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분들이 왜 시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 차관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급 과잉이고 PF 사업장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물량들이 과하다면 그 안에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성 공급들을 계속 잔존하게 하고 시장의 기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면 나중에 공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업장들 어떻게 조정합니까?

저는 미분양 사태를 근본적으로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왜 공급 과잉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부터…… PF 사업장을 지난 3년간 정리한다고 했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지 왜 공공이 못 들어가는지.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때는 시장 스스로의 조정기능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일관성도 없고요.

그러면 PF 사업장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악성 물량들이 계속 잔존하게 자꾸 사이드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저희 일산에 6억 미만 뺐습니다. 정말 일산에도 집들이 뺐어요.

○**윤영석 위원** 미분양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새로 건축하면……

○**김영환 위원** 저희 집이 지금 솔직히 4억도 안 합니다. 일산1동 한번 보세요. 6억이면 좋은 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억 기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구조조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가격을 낮춰야지요. 자꾸 가격 올리는 정책을 뒤에서 받쳐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구조조정돼야 공공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이 사업장들 정리를 하지요. 그런데 가격을 계속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여기서 해버리면 이 사업장 구조조정 안 됩니다. 악성 미분양 계속 남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때는 시장 조정기능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소위원장 박수영** 우선 발의하신 위원님 먼저 얘기 좀 듣고, 손은 아까 정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요. 안도걸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신 다음에 정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자재, 공사 원가가 올라 가지고 인상 요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서 미분양주택을 민간 부문에서 흡수하도록 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의 타기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수요에 기대기는 어렵고 공공 부문하고 또 특히 LH 그리고 지방의 주택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공 부문에서 이런 임대 물량들 흡수를 해 가지고 임대로 전환해 주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장 기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대주택 전용 리츠 있잖아요? 리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진 데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리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세제 지원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합산과세 이런 부분에서 그런 리츠에 대한 폭을 좀 넓혀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차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이 가장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결이 안 되고 계속 10년 이렇게 막 쌓여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부동산의 가장 큰 걱정이 집값 오른다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왜 서울과 강남 이쪽은 계속 오르고 30평짜리가 30억, 40억, 5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같은 수도권인데도 경기도도 있고 서울 오기형 위원님 지역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보니까 김영환 위원 쪽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의, 집값의 양극화가 정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말하자면 집값이 비싼 데 특히 국민주택평형을 넘는 그런 평형은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수요 억제를 하면서 시장 기능에 어느 정도는 맡겨 놔야 되겠지만 국민주택평형 이하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6억 이하 이런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지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 특히 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미분양 주택들에 대한 과세특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217쪽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분양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지역하고 광역시, 광역시에서도 또 다르고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 분양가격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조금 높기도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면 인천하고 지난번 국감 때 대전 가서 보니까 같은 인천, 같은 대전인데도 그 안에서 지역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과세특례까지 적용해서, 미분양 주택 해소가 과세특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큰 정책 작은 정책들이 많이 포함돼야, 지방이 발전해야 미분양 주택이 큰 틀에서 해결이 될 텐데 이것 하나도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만 6억 원 이하를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것은…… 일단은 6억 원 이하의 국민평형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민들, 중산층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8억, 9억 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사실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미분양된 것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일종의 조세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행 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실장님, 이 제도 시행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시행 시기가? 지금 연장 여부 이야기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4년에 시행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24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 2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고 변경하려면 그 과정에서 시행 효과가,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의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됐느냐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의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어쨌든 조세지출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래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작동되고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검토보고 속에도 그 내용은 없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그 당시에 국토부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그 시점에서 PF 정리는 PF 정리대로 하되 LH를 동원해서든 광범위하게 물량을 확보해서 공공임대 물량을 비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정부가 그렇게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 실제 수요는 수도권에 있는데 지방 것을 어떻게 비축을 하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모든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받아 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부가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든 과소 공급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추가 공급을 하는 거고, 하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면 이렇게 제도적인 조세지출을 통해서 일부는 관리해 나갈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수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 이상까지 할 거냐, 평균가격 이하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의 이 지점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미분양 물량을 조세지출로 다 해결할 것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고 과잉 공급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고려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의 확대가 적절하냐의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설명하실 내용이 더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8월 달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할 때 세제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LH에서 매입할 수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물량이 3000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000호 추가해서 8000호로 늘리기로 하고 그 5000호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현재 국회에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8000호 정도는 LH에서 사 주고 나머지는 세제 혜택과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서 흡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2024년 대비 1년 동안에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건축비, 자료 21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부산의 지금 평균 분양가격이 8억입니다, 8억 500만 원. 대구가 8억 3900만 원, 대전이 6억 2000, 세종이 6억 200, 전부 다 6억을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그런 일방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꼭 9억이 아니어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미분양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LH라든지 또 지방의 SH나 이런 데서 이걸 다 소화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확보해서 또 어떻게 임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믹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중에 생애최초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런 미분양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부 금융 지원이 있지만 그것도 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세제나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 세대나 취약계층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9억 원이 아니어도 상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위원님들 말씀 중에 사실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올바른 시장경제적인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수도권 위원님들하고 지방 위원님들 의견 차이가 나는 게 지방 현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시장에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깎는 데까지 다 할인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왜 더 못 깎느냐 그러면 다 적자 나서 망하는 건데, 지역의 건설회사 중에 대형 건설회사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 타기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분양이 안 되는 데가 부산하고 대구인데 부산·대구의 평균 분양가가 8억이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줘야지 우리는 부산·대구는 모르겠고 6억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산·대구는 그 타깃의 밖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데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려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무한히 가면 자본주의가 뭐냐, 그게 가격 기제가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한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망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지역 경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기팅 하고 단기간에 한번 기회를 줘 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서 가지고 소소위에 중간안으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서 2027년 말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례 내용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이게 행안위에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옳으신 말씀 같네요. 지특법이니까 행안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회로 발의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국회에 발의한 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의원님께 지특법으로 다시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 서민·농어민 상품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고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228페이지,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별 개정안 내용은 같은 페이지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상향은 국민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자산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요청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ISA 계좌 납입 한도까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ISA 계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켜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펀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투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선택을 저희가 존중도 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국부긴 하지만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서 국내 쪽보다 해외 쪽에 굉장히 쏠림이 있다는 데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든지 납입 한도 늘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 상

품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짚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늘려 나가게 되면 현재…… 아마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한도를 두고 비과세가 다 차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 그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입 기간당 100만 원씩 추가를 한다든지 계속 늘려 나가게 되면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된 사람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스크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청년들이 서민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서민층보다 더 나은 그룹에 있는 분들한테 추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지금 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정부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착수는 했고요. 그게 어떤 상품이나까지는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ISA도 전반적으로 손은 볼 필요가 있다까지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어쨌든 과세특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상호금융들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ISA 상품은 상호금융들은 취급이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예.

○윤영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상호금융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요, 이 사항이. ISA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상호금융에 있는 그 자금들이 이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호금융이 사실 상당히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급속한 자금 이탈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장을 했지만 상호금융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도 제가 냈는데 그런 안도 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안 그래도 취약한 상호금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이 결국은 우리 금융 전체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안도결 위원** 현재 ISA 비과세 문제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하나 차관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이어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현재 해외투자자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하면서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이었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ISA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ISA 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차관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장기투자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ISA도 하나의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못 정해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 한계는 있는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해외투자 쪽으로 너무 쏠림이 된다고 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내투자자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를 차별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이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단일과세지요, 세율이 25%?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정부안은 35%.

○**안도결 위원** 정부안이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억 이상 35%.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35%고 그리고 이소영 의원안이 25% 아니겠습니까. 단일세율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율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과세 형평 아니겠습니까? 일반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은 지금 45%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35가 됐든 25가 됐든 그만큼 저율과세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배당소득의 분포를 보면 그야말로 상위층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0.1%가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고 1%가 70% 차지하고 있고, 10% 하면 거의 90%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가 되면 대부분 대주주를 비롯한 고소득자에게 집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을 받는 분들 간에도 형평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걸 도입을 하게 된다면 분리과세 세율의 구간을 더 나누어서 누진적인 형태로 부과를 함으로써 약간의 과세형평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한 형평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

러한 세율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낼 때 저희가 35%로 최고 세율을 정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상위 구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지금 적정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5%가 주식소득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25%하고 키 높이를 맞춰야 됩니까라고 하는 건데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가지고 합리적인 과세구간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ISA 계좌 통해서 혹시 미국주식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해외주식을 직접 사는 건 아니고요.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요.

○**김영환 위원** 거기 주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비중이 한 30%……

○**김영환 위원** ISA 가입 금액이 42조, 25년 8월 기준인데 혹시 금액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로……

○**김영환 위원** 30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0%.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현재 해외 ETF를 사고 있는 금액이 9조 7000억 정도입니다.

○**김영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해외로 가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금융세제과장 윤수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질의 계속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그리고 사실은 비과세 한도가 외국처럼 크지는 않아요. 인센티브가 크지는 않는데 지금 이자·배당소득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구간은 최저세율부터 45%까지 몇 % 차이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6~45%……

○**김영환 위원** 6~45%면 39%. 그러면 배당소득은 지금 초과 부분 생각을 하면 9%, 14% 있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율분리과세 9%, 기본 14% 이렇게……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초과 부분은 지금 분리과세(안) 나온 것들이 20%, 25%, 35%……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3억 미만까지 20%, 3억 이상은

35%로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득세 비율과…… 왜냐하면 안도걸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진성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배당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상위소득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구간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싶어요.

그래서 도입하더라도 여러 국민들이 이탈감이 없도록 최고세율 구간을 잘…… 구간들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안도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부안 낸 게 그런 걸 감안해서 35%로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율 인하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위계층 세제 지원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ISA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작년에 했을 때 그 전제가 된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미 물 건너가 버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하나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ISA에 가입하는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30% 간다고 그랬습니다.

○**정태호 위원** 30%요?

○**소위원장 박수영** 30%가 해외로 간다고……

○**정태호 위원** 대부분 해외로 가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30% 정도 된다고 아까 차관님이……

○**정태호 위원** 그러면 국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세제 혜택이…… 어차피 여기 와서 이익을 얻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ISA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세제상의 이익을,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 ISA 계좌에 가입해서 이익을 볼 만한 특별한 세제상 유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ISA를 통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게, 그래서 아마 해외로 많이……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ISA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도걸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 ISA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던 원래의 취지가 금투세 도입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금투세를 어차피 시행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이 ISA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주식투자와 ISA 가입 이 관계가, 그러니까 국내 투자하는 비율이 적은 건 결국 금융소득 세제와 연관이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

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내 비중이 작다기보다 해외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35% 구간을 제안하신 거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배당소득……

○**정태호 위원** 예, 배당소득 분리세제.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은 30% 안을 제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소영 위원님이 25% 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양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물론 오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입장을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지금 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서민, 중산층에서의 부의 축적 과정을 도와주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그 목적이 되는 자본시장이 미국 자본시장은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범위라면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그 콘셉트 자체는 세 개 단어로 가치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산투자를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퇴직연금 기금화하듯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 장기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타성보다는 긴 호흡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ISA 계좌도 실제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부자감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것이거든요,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이 논의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의 전제는 금투세를 전제로 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가 없으니깐 이 두 가지 조건의 제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제도로 일정 정도 가는 것은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의미에서의 세제 개편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과 전제조건 속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ISA 계좌에 대해서 총액을 늘릴 거냐 또는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의 이 타깃은 일반 직장인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 중에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출발해서 일정 정도, 1년에 이 정도씩은 전액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거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년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 청년 기초자산 운용하는 그 기금·펀드 형성과 같은 문제의식 차원에서 ISA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제도 개편하기보다는 전체 세제 개편 논의하면서 같이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사실 ISA 확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고요. 차관님, 저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선후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사실 배당에 대해서 고율의 세액을 물리다 보니까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이 배당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PBR에 빠지고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걸 발전시키자라는 논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제도 초창기에는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겠지요. 그런데 그 혜택이 처음에는 가더라도 당연히 주식투자자 전체에게 혜택이 가게 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끌어올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배당이 되는 거니까 다른 근로소득세제랑 바로 일차원적으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당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차관님께서 ISA 확대해 줘야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줄이려는 각오를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 안에서 방금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장기투자,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형태로 ISA를 우리가 좀 더 장려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밸류업하자라는 기조에 맞는 거지 이것 해 봐야 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것 못하겠다. 저는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근본은 기업의 경쟁력이겠지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것 해 봐야 잘 안 될 거야 아니면 고소득층에만 갈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건 아니다.

지금 저희 ISA 계좌가 연간 한도도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비과세 한도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당장 이 자리에서 얼마로 하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늘리자는 안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내신 건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공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기형 위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논쟁을 하면서 했지만 현재 미국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서학개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세제 가지고 미국으로 쏠리

느냐 한국으로 쏠리느냐의 키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칼럼들을 보면 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세제 개편에 대한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뭐냐라는 걸 서로가 공감하는 전제하에서 이 세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선회를 하자면 ISA 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다면 이걸 발라낼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은 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이슈냐, 이 이야기가 서로가 디테일하게 논쟁이 되면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 대해서 이런 장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중산층에 있어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보장해 주자 이런 문제의식에서는 지금 서로가 다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 수준의 폭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속에서 그 전제조건이 되는 종합과세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ISA 계좌에 대한 거나 다른 게 제도적으로 논쟁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점이 서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ISA에 가입한 사람 중의 30%가 해외 주식시장에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걸 국내 ISA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는 거고요. 해외 주식을 직접 사게 되면……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거든요. 오기형 위원님 질문은 미국은 금투세가 있는데 우리 ISA에 들어온 사람이 미국에 30%를 투자한다, 금투세 있어도 투자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ISA로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에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오기형 위원님의 지적은 근본적으로는 국내에는 주식양도세가 없고 해외로 가면 주식양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그만큼 뭔가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당연하고요.

아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세율의 혜택이 없어서 ISA 가입 안 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해외 주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목표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내형 ISA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

으니까 그것 논의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ISA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왔던 배경에는 금투세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를 하는 대신에 자산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과세, 일종의 비히클(vehicle)을 만들자라는 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하자니 뭔가 전제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과세만 자꾸 늘려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전제돼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ISA가 원래는 서민하고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고 저축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ISA 제도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당초 제도를 도입했던 그 목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임광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서민 중에서도 좀 세분화해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타깃을 새롭게 설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의무가입기간 3년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택권이나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선택권이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참고로 임광현 의원님은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례를 더 인정해 주자는 법안을 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기재부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방향 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자산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즉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국내 ISA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대신에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고액 자산가의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해서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은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했던 ISA의 구조, 비과세 한도나 납입 한도 이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지 않은,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한도, 비과세 한도나 납입 한도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내투자형 ISA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ISA의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개별 주식에 대한 것으로 줄 건지, 아니면 저축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에게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건에 보면 특히나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는 언제까지 고민하면 됩니까? 이것 작년, 재작년부터 논의돼서 작년 법안에 올라왔던 거를 우리가 논의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거거든요. 도대체 2년 동안 고민해도 안 되면 언제 고민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말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금투세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한창 논의 중이고 그러고 나서 이것도 봐야 되고, 순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는 못 하지만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ISA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소위에 올리지는 아니하고 내년이나 기재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동 계좌에 보호자가 일정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두 개정안의 비과세 혜택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관련 아동복지법 2건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적립금 지급에 따른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국가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 두 계좌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기여분이 있고 또 부모의 기여분을 넣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정부 기여분에 대한 내용이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것을 보면서 저희 쪽에서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증여할 수 있는 게 10년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넣으면 그 증여세 조항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고 한도를 다 채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때 저축 여력 외 추가로 증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 자녀한테 지금 당장 급한데 자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세이브를 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증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또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중에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고민하시겠다니까 드릴 말씀이 참 그런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투자, 아동의 자산 형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젊은 나이, 어린 나이부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하고 이런 게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들이 이런 것을 하기 쉽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차피 정부가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부모가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매치하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이 법안 내용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치해 준다는 아동복지법 자체가 앞으로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적립해 주겠다는 거라면 부모가 해 주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법 통과될 때 다시 장기적으로, 소소위에 안 올라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청년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 부분입니다.

274페이지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 건이 있고, 278페이지와 288페이지에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한 과세특례로는 이자소득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

의 자산 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적금의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 278페이지·288페이지의 정태호 의원님 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전의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80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꾸준히 요청되므로 청년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저축상품의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안과 그리고 기존의 저축상품 간의 차이점은 281페이지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청년도약계좌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미래적금은 뭔가요? 새로 만들자는 건가?

○전문위원 정지은 청년미래적금은 이번에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을 만들면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하고 새로 만드는 미래적금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 부분은 저희가 281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5년하고 3년 차이가 있고 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 면에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그리고 농특세 비과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 면에서는 매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은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일몰이기 때문에 일몰 연장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청년미래적금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설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에서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의견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운용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는 금융위에서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고 더 이상……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계속 나가는데요 내년부터 더 이상 추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제 지원은 일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정태호 의원안에 지금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281페이지 표에서 도약계좌랑 청년미래적금 차이를 보시면 정부의 매칭 비율이 혜택 파트 보면 예산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3~6% 매칭이고요. 청년미래적금에서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6%, 12%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에서 6을 8로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8% 아니면 12% 해서 매칭률이 좀 더 좋은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정무위에서 그 안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무위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무위 통과됐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게 예산안이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 예산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예산안 해서 예결위 보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우리도 통과를 시켜도 되는 사항이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사실 정부 바뀔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 청년도약계좌 했다가 지금 이제 또 청년미래적금으로 바꾸는 건데 물론 각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하는데, 지금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입자 수가 이미 8월 기준으로 223만 명이고 가입 가능한 청년 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의 37% 정도가 가입될 정도로 이미 홍보나 가입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러니까 신규 가입 완전히 폐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홍보비용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근본적으로 맞나.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기존 프로그램을 승계하면서 그 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하실 것 같으니까, 이미 내년 예산에도 넣었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내용적인 걸 짚어 보자면 여기 가구소득 같은 경우에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250%였는데 이 가구소득을 중위 200%로 한도를, 실링(ceiling)을 약간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도 마찬가지로였는데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은 조특법에 규정은 없어요. 이걸 그냥 정부에서 내부 지침 같은 걸로 제한하는 게, 이게 어쨌든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해당하는 청년의 급여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소득 요건까지 넣는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부모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해서 청년에게 미래적금을 못 들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이것……

부모님들도 다 각자 자기 노후 준비하느라 바쁠 수도 있을 건데, 애초에 이걸 넣는 것도 의문인데다가 또 법기술적으로 규정에도 없는 걸 이렇게 임의로 기준을 추가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도 같이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 주신 것 중에,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왜 법에 근거가 없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도약계좌도 그렇고 개인의 소득 요건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자체는 상품 약관에 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도약계좌도 그랬지만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미래적금도 세제 혜택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매칭도 같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 규모, 매년 재정여건 또 실제 가입률 이런 걸 봐 가지고 중간에 약간의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품 약관에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청년미래적금의 대상자는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소득 이걸 굳이 고려할 것 있느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3년 근무해서 착실하게 자기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부모 소득이 많아서 자른다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부모가 좀 더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증여로 공제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특별한 혜택들이 있는 그런 상품들에까지도 그런 부분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아니, 이건 우리아이랑 다른 거잖아요. 아이는 당연히 부모 소득을 고려해야지요. 해야 되겠지만 이건 청년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하는 청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부모 소득 고려해서…… 우리가 다 큰 성인들을 이렇게까지 할 겁니까? 우리아이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어떤 혜택이 되면,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자식의 생활비는 부모가 하고 자식이 번 돈은 이런 데에 넣고 이런 것까지 조금……

○천하람 위원 그거야 예를 들어 증여가 과도하다고 그러면 증여세를 몰도록 할 일이지, 어쨌든 요건이 엄격한 제도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가구소득 이것 오히려 역차별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모 소득이 많은데 나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착실히 일하는 청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중소기업에 3년 근속 이러면 아주 착실한 청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기대기보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중소기업이 있는 우대형이 있고요. 일반형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소득으로만 가입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소득으로 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면서요, 일반형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에 아마 콤마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콤마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급여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위원장 박수영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소상공인이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게……

○소위원장 박수영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이든 일반이든 비슷한 규모니까 같이 넣어 놔 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양해해 주신다면 금융위 담당 과장이 왔는데요. 상세한……

○소위원장 박수영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 양재훈 서기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 부분이 있고 그냥 소득자 부분이 있고요. 소득자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오기형 위원 부모의 조건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걸 빼도 되느냐, 어떤 고려에서 이걸……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 양재훈 부모 소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청년도약계좌 출시할 때도 금수저 논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이 많은 청년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 기준을 뒤 가지고 좀 제한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미래적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받아들여서 가구소득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금수저 논란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천하람 위원님 한 번 더 말씀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천하람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냥……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실장님,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상품이 많은 거잖아요, 배당소득이 있다는 건 금융상품도 많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에만 해당이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걸 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적금 형태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을 좀 줄인 것 아니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무슨 말씀인지는……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금융위 과장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까지 투자할 때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청년이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면 이걸 그냥 적금 형태로 하자는 예산실의 논리도 있고, 또 다른 투자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적금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다른 투자상품은 또 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아까 ISA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본적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금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조세지출이나 예산지출이나 어떤 정책 목표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조세지출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예산적으로도 지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세지출이니까 어떤 특정 자산 형성에는 정부 기여금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한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약 계좌는 했을 때 배당소득 비과세로 정리를 해 줬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참언 드리면요, 청년도약계좌도 처음에는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들어가는 상품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재정 넣는 과정에서 적금만 하기로 아예 상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도 적금 형태로만 그간에 운용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낼 때는 아예 적금만 넣고 저희 세제실 쪽의 그런 걸 반영해서 이자만 비과세하는 걸로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상품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그 상품이 안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조세지출은 재정지출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말씀은 맞는데, 이건 상품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그게 없다는 말씀을……

○**김영환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조세로 다 건어서 재정지출을 해 주면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지출하고 조세지출하고 딱 구분을 해서 재정지출 쪽은 적금만 해 주고 조세지출은 자산 형성의 모든 걸 도와주고, 나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지출이나 조세지출이나 구조가 똑같은 재정지출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세제 지원 상품 자체가 어떤 투자 손실이 있는 것에도 세제 지원이 나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세제 지원이라는 건 본인의 어떤 행위,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건 뭘 하건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것의 손실까지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런 위험, 리스크를 지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다르게 재정 지원은 순수하게 진짜로……

물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재정으로 나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재정을 주는데 이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금만 자꾸 해 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의 특별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조세지출이나 예산지출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체 한

번 통틀어서 다, 만약에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한다면 다음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왕에 도와주실 거면 정말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것도 청년들에게 스터디 아십니까? 되게 중요한 금융 투자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나중에 자기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스스로 독립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 몫 아닌가요?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지금 어쨌든 청년도약계좌에 비해서 청년미래적금의 매칭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계시는 분인데 3년이 아직 안 된 분이 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면 해 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천하람 위원 그건 해 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해 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중복은 안 됩니다.

○천하람 위원 중복은 안 됩니까?

그러면 이미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안내가 나갈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로 갈아탈 건지, 기존 상품을 유지할 건지 이렇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상품 출시할 때 당연히 그런 홍보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연말로 일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소소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가구소득 제한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재부가 검토해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 예. 아까 논의 중에 정부가 바뀌니까 똑같은 제도를 간판만 바꾼다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의 청년미래적금은 어떻게 보면 청년도약계좌 플러스 지난 정부에서 없었던 중소기업 청년들 내일채움공제, 그걸 없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내일채움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일반형하고 우대형으로 이렇게 나뉘졌거든요. 그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특히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또 장기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데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건데 그게 우대형으로 지금 들어간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건 정확히 해 주시고.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2~4%, 3~6, 8~12가 됐네요. 이렇게 하는 건 결국에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지원분이지요? 이자 지원분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 양재훈** 이자는 별도로 있고 기업하고 매칭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따로 붙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자는 또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본에 지금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추가로 들어갑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것 하나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288페이지입니다.

이건 청년미래적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라서 일괄해서 같이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지금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13-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금융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이……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 오후에 하십시다, 지금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건 앞의 것하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재부가 의견 들고 소소위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13-추가, 별권입니다.

2건의 안건이고요. 첫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올해 일몰 예정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앞선 청년미래적금과 유사하지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자소득 비과세가 아닌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

이나 동 상품이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제도로 설계되어서 과세미달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입 실적이 현재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적금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상품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일몰 종료하시는 걸로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렇게 저조하다고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1만 3000명이고 ISA는 270만 명, 청년도약계좌는 223만 명 이런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ISA보다 저조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금융세제과장 윤수현입니다.

ISA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혜택도 큰데 여기는 하나 선택하면 그것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선택권도 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걸 고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일몰시키면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걸 정부안대로 일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두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종료안으로 들어왔는데 의원 발의안 2건이 지금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적용기한 연장안으로 1년 연장, 3년 연장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7년도에 1년간 한시로 출범을 하였다가 이게 여섯 차례 연장이 되어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급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으로 한정이 되고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통해서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됩니다.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당 특례는 지속적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요.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조세지출 현황과 그리고 외국인환자 수 현황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요. 최근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관련 환자 수와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세제 지원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효과와 일몰 연장 시 관련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의료관광객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입할 때 27년에 70만 명까지 유치해 보자라는 목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117만 명까지 들어와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한 환급액의 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에는 이십몇억 수준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778억까지 갔고 올해는 현재로 봤을 때 2100억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조세지출의 의미를 이미 다 달성했고 지금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왜 우리나라에 오느냐, 외국인관광객에게 했을 때 가장 1위가 기술입니다, 의료기술. 그리고 비용은 8위 정도 되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일인당 한 10만 원 내외의 환급인데 이렇게까지 조세지출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종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지출과 환자 수를 나누면 일인당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건당.

○소위원장 박수영 건당 한 10만 정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저는 일몰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올해 관광객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이쪽 분야에서 여기 기록에도 있듯이 성과가 있는데 자칫 이게 안 좋은 신호가 될까 싶어 가지고 좀 걱정이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는 말도 있듯이 혹시 그 위험성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그전에도 한번 논의해 주신 것 중에 외국인관광객 숙박 환급 제도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조금 이용 실적도 적고 그래서 말씀처럼 2개를 다 동시에 일몰을 종료시키는 거보다는 숙박이라는 게 좀 더 필수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2개를 전부 다 일몰시키는 거보다는 하나는 이미 효과를 달성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일몰을 시키고 외국인관광객 숙박 환급 특례는 좀 더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외국인들 쪽 체크해 본 것 중에서 이게 결정

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종료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출입국 관리할 때 불편함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입국 관련해서 비자 제도나 이런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가 또 다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고민하는 지점들을.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일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한 10년 정도 죽었는데 그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군 단위에서도 그 지역을 설명하는 안내서 같은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관점을 넓히자면 한이 없는 것인데 이 안건으로 딱 좁히자면 염려는 없습니까? 이것 일몰시키면 성형이라든지 미용하는 의사분들의 매출이 줄어들 우려는 혹시 없는 것인지. 이 산업이 이제 커 가는데, 게다가 중국 관광객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차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성형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면제를 해 주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다, 비행기 값·호텔비를 커버할 만큼의 큰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큰 유인이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 미용성형 관광을 오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미 지출하는 것인데 건당 10만 원, 물론 그 건당 10만 원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것 자체가 한국을 오는 데의 결정적인 요인 또 미용성형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건당 10만 원이 맞기는 맞습니까? 그러면 미용성형을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 애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것의 부가세 부분을……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의 부가세면 10만 원이 아닙니까? 건당 100만 원을 쓴다는 건가요, 성형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까? 저는 성형 안 해 봐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비싸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한 건지 여쭙보는 겁니다, 건당 10만 원.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저희가 복지부에서 받은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게 피부과 그리고 성형 영역 그다음에 내과통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쭙본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확실해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전체적인 경제 흐름으로 보면 결국 내수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데 이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관광이라고 봐요. 마침내 관광객이, 올해 아마 2000만 명 가까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을 한시적이지만 무비자로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수술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목적으로 와 가지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쓰는 비용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수성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중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할 때 아마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 버렸을 때 일종의 마케팅을 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더라는 게 이 업계 쪽의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게 차지하는 역할이 꽤 있는데 한 1년 정도라도 연장을 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계속 타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일몰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고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재부 쪽에, 사실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요탄력성을 좀 조사해야 되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을 멈추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혹시 그 탄력도는 조사를 해 봤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심층평가를 했고요. 심층평가 결과도 도입과 운영 목적이 달성됐다, 이것은 종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수치 같은 게……

○김영환 위원 심층평가를 할 때 목적이나 그런 것은 달성이 됐을 텐데 이 수요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한 탄력도 조사가 됐는지가 지금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 환급이 진짜 환자한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병원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 차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옆에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일몰인데 심층평가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연장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심층평가가 안 되는 것은 전부 심층평가하고 되는 것은 안 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심층평가 결과를 다 반영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신용카드도 사실 심층평가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심층평가 자료 한번 다 줘 봐요. 그것 읽어 봐야 되겠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계속 보내 드리고 있는데 또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보내고 있어요?

○오기형 위원 저희 방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책자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책 보고……

○정일영 위원 책 보고 얘기하고.

그것 좀 분석해 봤어요? 심층평가에서 좋다고 나온 게 몇 %나 되는지?

○김영환 위원 심층평가 환류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사실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어제 많이 했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전부 심층평가하면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장기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말을 ‘그래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몰 연장을 갖고 왔고요. 이 경우에는 없애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심층평가가 어디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재난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야 세수 감소하는 것, 쉬운 말로 깎아 주는 것은 다 반대하지. 중립적인 기관에다가 시켜야지 그런 기재부에 도움이 되는 기관에 시켜 가지고 평가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심층평가가 우리 방에 와 있는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심층도 있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제가 인천공항 사장 하면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봐서 공항에서도 이런 미용성형 의료용역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고 또 제 지역구가 인천이고 송도 국제도시인데 거기에도 미용성형 이런 병원들 꽤 많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 또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항공사 승무원들도 잠시 들러서 하고 그러는데 이 수요가 많고 인천에도 전체적으로 의료관광협회인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또 K-뷰티 이렇게 해서 좋지 않습니까, 요즘.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싹둑 잘라 버리면…… 이것은 최소한 내년, 아니면 박정현 의원안이 2028년이네요. 어쨌든 1년이라도 연장을 하고 저랑 같이 심층평가를 해 보시도록,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는 심층평가 결과 따라서 저희가 조세지출 줄이는 것을 잘 못 했는데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이것을 없애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10% 감면 없애더라도 외국인들이 느끼는 충격이나 이런 게 당장은 별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K-뷰티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워낙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부가세 1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에 성형 목적으로 의료관광하러 오는 분들이 안 하고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여기는 우리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환율 상황이나 우리 경쟁력 또 아까 말씀하신 심층평가 결과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이번에 일몰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환율이 1500원 유지될 거라고 상정하셨는데 차관님도 끄덕끄덕하시는데 그것 아니지요? 환율 정리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그렇다는 전제인 것이고요.

아까 전에 연구원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환자에게 왜 왔냐라고 물어본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때 30%가 ‘의료진이나 의료기술 때문에 왔다’ 그다음에 2등이 ‘했던 사람이 다시 추천했다’ 18%고요. 17%가 ‘의료장비와 시설이 좋다’고요. 네 번째, ‘의사소통이 편리했다’가 10%입니다. 4등 안에도 없습니다. 의료비는 4.5%밖에 안 됩니다.

○정일영 위원 뭐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의료비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은.

○정일영 위원 그것도 좀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저희가 영향력을 아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도 설문 설계가 당연히 1·2·3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네, 보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기재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입장이 좀 나뉘시는데 아까 심층평가 결과하고 좀 더 보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14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지출에 대한 10% 세액 공제율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을 계기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인 지정제도가 2017년 10월 말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가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택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서 감사보수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해서는 감사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서 감사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R&D를 하면 추가로 일반 대기업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보수에 대해서 또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산이 500억이 넘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 되는 일정한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천하람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먼저 회의를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다양한 지원들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2페이지, 자료도 보시면 나오니다마는 2018년에 1억 4000에 미달했던 감사비용 같은 경우가 2022년이 되면 2억 7000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감을 받는 대상 중에 중견이나 대기업은 당연히 빼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외감을 받도록 하는 게 기업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시장에서의 투명성 제고나 이런 것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서 부여하는 의무고 또 이런 게 넓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이런 것에도 기여하는 면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없겠나 해서 올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 실장님, 이게 2017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하고 그 후하고…… 그 전에는 그러면 외감을 안 한 건가요, 17년 법 통과되기 전에는? 외감 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고 이런 건가요? 2배 이상 뛰어서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전에도 외감은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지정감사인……

○천하람 위원 18년에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절차가 엄격해지고 투입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에 신외감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017년이 아니고 2018년?

○천하람 위원 예, 18년.

아, 17년 10월에 도입이 됐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예, 아까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2017년 10월이라고 전문위원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 법 때 문에 외감이 도입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은 아니고, 2018년은 뭐고 2017년은 뭔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신외감법이라고, 규정이 바뀌면서 절차가 좀 더 여러 가지 것이…… 표준감사인 제도가 도입되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천하람 위원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엄격한 제도가 18년에 들어오면서……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런데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네요.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팩트만 잠깐 확인하려고요.

천하람 의원님 법안에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감사보수 지출액의 10%라고 돼 있는데 이 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세액 공제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장사 감사보수 변동추이, 이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대기업 다 포함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상장법인에 대한, 오히려 굉장히 큰 법인에 대한 이야 기로 보입니다. 상장법인입니다.

○정일영 위원 상장법인들.

그리고 감사보수라는 게 그 회사 내 상임감사가 아니고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2022년도 2억 7561만 원 정도보다 보수를 좀 적게 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정일영 위원 확보가 안 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도 그것을 알아야 세수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정일영 위원 생각보다 이게…… 2억 7500만 원이면, 이게 한 회사당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일영 위원 꽤 많아서 너무 이상하다, 많다, 부담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군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2페이지에 나온 통계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전부 다……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예, 상장법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상장법인 전체의 외감 비용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만인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박금철 이것은 상장법인 전체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사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정확한 통계를 알고 세수효과도 좀 더 뽑아 내고 할 수 있는데 그 부 분에 대한 통계가 지금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발의하신 천하람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사실 그 통계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신외감법이 들어오면서

표준감사시간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 통계는 상장사 대상 통계인 것은 맞지만 외감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애로를 저희가 듣고 낸 법안이어서, 어쨌든 외부의 회계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표준감사시간 이런 게 들어오면 그분들은 사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여기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비용 부담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혹시 기재부 차원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통계를 뽑아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고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쓰는 외감법에 의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세수감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사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기재부에서 좀 더 자료를 찾아지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위에는 안 올리고 1월 달까지는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5페이지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 공제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박수영 의원님 안은 별도의 공제요건 없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2025년 5월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민간기업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할 경우에 그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에 공제요건 등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데 김상훈 의원님 안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고, 박수영 의원님 안은 별도의 요건없이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추징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규정 형식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김상훈 의원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 넣게 되면 10% 공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 산입에서도 깎아 주면 실제로 25%, 내는 만큼 법인세도 깎이고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공제가 좀 과하다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는 것은 저희는 신중한 생각이고요.

박수영 의원님 안은 모든 내국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의 대상이 수출기업 중심에서 대기업도 해당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보험기금이, 무보가 한미 관세협상하고 관련해서도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도 출연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많은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무보의 기금이 많아지면 역할도 더 커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정부재정으로만 기금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면 재정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천하람 위원님,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천하람 위원**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특히 박수영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보의 역할이 커질 텐데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출연 없이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서 무보의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무보기금에 출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이 부분에, 박수영 의원님 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취지가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10%를 했을 때 세수 감소가 3년간 51억 원, 이게 맞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예정처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정일영 위원** 전문위원님이 만드셨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산정책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이것은 3년 일몰 기준으로 해서 51억 원으로……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숫자냐 이건데요. 다른 데는 엄청 크게 내놓더니 이

건 또 박수영 의원님 안이라 그런지 엄청 줄여서……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장안이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천하람 위원 아마 늘어날 것을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 그 과정을 앞으로……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51억 원밖에 안 된다면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해도 효과가 없는 거거든. 별로 출연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출연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추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추정을 안 하고 현재 구성돼 있는 구성비에 이 공제율을 적용해서 51억 원을 만든 건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첨언하면, 지금 그 비용추계서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출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계한 안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증가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추계가 돼야지 목적은 증가시키려고 그러는데 추계는 안 늘어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판단을 해요? 참 회한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간 출연한 기업 입장에서 특별한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데, 예컨대 100억을 출연하면 10%를 공제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억을 공제하고 90억은 순수하게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다.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출연한 돈의 10%를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세수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소소위에서 최종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무보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제한 없이 다 풀려 있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대기업까지 들어가 있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다른 어떤 제한을 걸더라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대기업이라도 많이 내고 자기들은 10%만 가져가는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출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돈의 쓰임에 제한이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이 대기업한테도 도움을…… 대기업이 무보에 가서 보증을 받아도 이 돈이 쓰임이 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원래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출연한 사람이 출연했지 만 자기 그룹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협력사에 이렇게 돼야지 상생의 흐름이 생기는데 대기업이 냈는데 대기업이 보증받는 데 돈이 쓰인다면 이 부분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내국법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혜택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니 출연의 목적이 좁혀져야 대기업이 내더라도 세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하고 무보하고 했을 때는

현대가 현대의 협력사들의 수출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돈이거든요, 100억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필요하시다면 기재부에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이것은 기재부에서 정교하게 설계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일단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다시……

○정일영 위원 고민을 오래하지 말고요 내일까지 해서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상시근로자 일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로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유사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정부 측 의견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구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 먼저 듣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매번 반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먼저……

○박성훈 위원 특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연구개발특구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특구 입주기업들 중에서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여부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지역소멸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다 보면 다른 유사 지역특구의 경우에 전문인력 상시근로자에 대한 감면한도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또 감면세액과 감면한도가 작은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큰 경우에는 그 혜택을 고스란

히 받아서 오히려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R&D나 기술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자를 늘려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AI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통해서 각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가 말 그대로 진정한 연구개발특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인력 근로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지방소멸이라든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우수인력·전문인력 확보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무슨 세를 깎아 준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이고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감면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세목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소득세나 법인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소득세나 법인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러니까 그게……

○소위원장 박수영 플러스입니까, 오어입니까?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오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인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자,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부분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이 어떤 분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한다면 어떤 것이 전문인력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하고 전문인력이 같은 동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이면서 전문인력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청년과 전문인력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한다면 아마 전문인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이 고민인데 그게 정리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차관님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인력과 청년 두 개를 놓고 보면 결국 청년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차관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전문인력과 청년에 대해서 각각 우대를 줄 수 있는 제도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것은 당장 내년도 세입이나 세출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연구를 조금 더 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관한 건입니다.

2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엄태영 의원님 안은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 공제와 주식취득 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천하람 의원님 안은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며 그리고 주식취득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관련해서 세액 공제 연혁은 21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 공제는 제도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2024년 말에 종료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 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안은 현재 관련되는 유사 세액 공제제도로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등의 주식 등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서 공제 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참고로 소수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서 2024년도에 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태영 의원님 안 관련해서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이고 이것은 2027년 12월 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에 두 가지 제도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련된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합병 시 세액 공제가 있고, 하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세액 공제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합병 시 세액 공제는 2014년 도입 이후에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종료시킨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식취득 세액 공제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24년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취득 기간을 2년 내에 다 사라고 했다가 너무 짧지 않냐, 3년까지 사는 것을 허용해 주자. 대신에 그러면 공제율 10%는 과하니, 벤처도 다 5%니까 여기도 5로 가자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막 제도가 시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다시 또 공제율만 올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논의랑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이것은 제가 발의해서가 아니라 저는 되게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 게 이게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련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실적도 별로 없고 조세지출 규모도 얼마 안 되냐라는 것을 보면 대기업이 직접 R&D에 지출을 하게 되면,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R&D 하게 되면 세액 공제율이 30% 그다음에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벤처나 스타트업이 해 놓은 기술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5%, 10% 이렇게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할 동인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용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벤처나 스타트업에서 기술을 잘 개발하고 대기업이 인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벤처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대기업이 자꾸 기술 탈취한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세 혜택을 받으면서 인수하고 합병하도록 해 주는 게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KDI가 2024년에 조세특례 임의 심층평가를 했는데 지금 기술 취득을 위해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 전문인력하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인수합병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인수합병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KDI에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더 제도를 키워 가야 될 일이지, 기존의 감면이 얼마 안 돼서 실효성이 없던 것을 키워야지 감면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실효성이 없었으니까 없애겠다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에서 한 번 더 답변을……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자기 기업을 안에서 키우면 감면율이 30%, M&A 하면 10%, 이 팩트는 맞는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대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나에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에 높은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으면 높은 세액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일반투자 같은 경우는 1%나 2%를 적용받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대기업이 자기 스스로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잖아요. 벤처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 놔거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기업이 벤처투자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체 시설투자를 했을 때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하람 위원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R&D 전반에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R&D.

○천하람 위원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인수되는 금액 전체가 아니고 기술 가치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이 직접 R&D를 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이나 이런 구획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처나 스타트업 인수해서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는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장치는 너무 지금 미약하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하나 여쭙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가 특별히 세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것은 폐지가 이미 된 겁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벤처정책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 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커요. 하나는 스케일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하고, 두 번째로는 엑시트(exit)하는 데 있어서 IPO 외에는 특별하게…… IPO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엑시트의 대부분이 M&A지요. 한 50%에서 60%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이런 기업과 기업 간의 혁신형 합병, M&A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들은 계속 유지해 주는 게 특별하게 손해나는 게 아니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굳이 이것을, 물론 폐지가 된 거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맞는 방향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취지가 있으니까, 실적이 없어서 폐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제율을 올리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벤처 생태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방법인지, 이 방법으로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합병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제도도 뭔가……

○정태호 위원 그쪽, 벤처업계 쪽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작년에 일몰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논의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스터디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업계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일반법인이 벤처투자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법인이 벤처투자할 때는 5%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맞춘 측면도 있고요. 지금 14권째지만 앞에서 계속 벤처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새로 들고 온 것도 있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SPC 설립했을 때 세제 혜택도 많은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도도 잘 설계를 해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것에 저희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이것도 사실은 한번 24년도에 일부는 일몰시키고 또 일부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몰시킨 것은 다시 살리

고 그때 제도개선한 것은 다시 원래로 가고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말씀 드린 겁니다.

○**정태호 위원** 일단 M&A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 여부, 폐지 여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다가 정태호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 내년 2월까지 업계 간담회도 하시고 차관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회사가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특화선도기업에 신규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부장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적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지만 제도 도입 이래 조세지출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처럼 도입 이후에 한 번도 활용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러 고민 끝에 일몰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벤처에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선택했을 때 제일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요건보다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벤처 세제 지원을 받았을 때 좀 더 혜택이 크다고 하면 일부는 그쪽으로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소재·부품·장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일본이 수출 제한을 했었을 때 아마 소부장을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 제도와 그다음에 논의되는 소부장하고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보다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벤처 지원 제도가 좀 더 낫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 정부 말씀대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30페이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제도 관련 개정안입니다.

전체 5개 항목의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30페이지는 관련 공제제도 개요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온 내용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양자컴퓨터와 우주항공을 추가하는 내용이 나목과 다목으로 제시가 돼서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4페이지입니다.

나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양자컴퓨터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의 내용은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양자컴퓨터와 우주항공과 관련된 세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자컴퓨터 부분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전략기술 대비 10%p 낮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한된 재정자원이나 그리고 해당 기술의 전략적인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주항공 기술과 양자컴퓨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R&D 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떤 것에 투자를 하려면 R&D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 시설이 되면 좀 이따가 투자에 대한 공제가 같이 들어가는 이어지는 선상에서 R&D는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겠다 해서 공제율이 이미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별로 차이나지만 신성장·원천이 되면 대기업이면 20%, 중견이면 25 그리고 국가전략이면 30~35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OECD 어디보다 제일 높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냐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과 그다음에 신성장·원천으로 나눈 이유는 그래도 국가전략기술까지 가려면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용화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진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제대로 되겠다 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술이 이걸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들어가 있는 8개 분야는 그래도 상용화까지 갔다고 보고 지금 나와 있는 양자컴퓨터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원천 개발 단계다.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신성장·원천으로 넣어 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일반 기술과 달리 우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좀 보자 이런 차원인데요. 그런 것 없이 다 국가전략기술로 가면 아마…… 빠짐 없이 국가전략기술로 가면 이 기술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희는 굉장히…… 원래도 처음에 만들 때 3개밖에 안 했거든요, 국가전략 처음 만들 때. 그런데 계속 늘어났는데 그래도 상용화되는 것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양자컴퓨터 발의하신 정일영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 예, 있습니다.

역시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논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차관님의 일관된 논리의 핵심은 상용화 기준이네, 상용화. 그렇지요? 그런데 상용화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부에서 전략기술 해 가지고 세액 공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걸음마 단계에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잘 뛰어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덟 가지라고 그랬나?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산업,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로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바이오의약품.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등의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도 돼 있고. 그리고 양자컴퓨터를 지금 만들어 내는 데가 미국 IBM하고 구글이지요, 아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이번 정부가 그걸 좀 표방한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겠다고 글로벌 선진국가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 양자컴퓨팅 기술이 그 중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양자컴퓨팅이 돼야 앞으로 노벨상도 나오고 반도체든 이차전지든 이런 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양자컴퓨팅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 35점인데 우리는 2점이에요, 2점. 조사 대상 12개국 중의 최하위.

그런데 양자컴퓨터 시장은 연평균 20.1%씩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1년에 우리나라 양자컴퓨팅 시장 규모가 3200억 원, 작년엔 789억 원이던 게 3200억 원,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미래산업의 가장 핵심파트고 중요하고 이걸 키워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선도, 글로벌 리딩국가로 클 수 있고 한테 이게 상업화가 안 돼 있다고, 상용화가 안 돼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국가전략기술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상용화될 것 같으면 이미 기술 많이 개발되고 더 그걸 상업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게 컸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더 크게…… 그런데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지만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을 우리는 그러면 ‘네 스스로 커라’, 이것 어떻게 크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왜냐하면 원천기술일 때는 실제로 R&D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98억 밖에 안 되던 것을 내년엔 500억까지 넣어 가지고 R&D를 더 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하는 거고요. 신성장·원천이 된다고 해서 공제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20%에서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일영 위원 걸음마할 때 한 손 잡아 주던 걸 두 손 잡아 주면 더 잘 크지. 꼭 한 손만 계속 잡아 준다는 주장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애기 키워 봤잖아요. 두 손 잡아 주면 훨씬 잘 튼튼 튼튼 잘 가고 빨리 크지요. 양자컴퓨팅도 재정에서 R&D 자금뿐만 아니라 이것 얼마야, 그런데 추정 곤란이네요? 세수효과 추정 곤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도와줘서 8개 항목에 넣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첫 번째, 산업부의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하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데 기재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하고 차이가 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용어에 차이가 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산업부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자기네 나름의 작명을 했고요.

○김영환 위원 첨단전략산업?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정부 간 이렇게 헛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정부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산업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 칸막이…… 저는 정일영 위원님 문제 제기의 조금 연장선상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라고 이렇게 기술현황을 죽 정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죽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상업화 얘기를 했는데 구분 자체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도 상업화가 이미 이루어지면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록을 한번 보시면.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도 예를 들면 수소, 디스플레이, 백신, 이차전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그 구분, 경계를 어디서 확 잘라낼지, 대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아요? R&D 지금 한 10%p가 차이 나는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술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영환 위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이 대기업, 중견기업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액 공제율이.

그런데 무 절단하듯이 딱 잘라내서 이게 어느 경계에 있는지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는 애매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구분의 기준들을 늘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기술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제 기술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를 섭외해 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기술의 이해관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 사이트에서 정말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구분 지어 주고 가르마 타 주는 게 되

게 중요한데,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못해 시장 질서도 바꾸는 게 이 기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진보기업들이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계속 가로막고 기존 기술로, 물론 혁신이지만 그런 기술로 계속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이나 경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 줄지.

○소위원장 박수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님 말씀이 저는 조금 경계의 모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박성훈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초격차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국가전략기술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 절차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절차……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세액 공제율도 보면 국가전략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씩 더 높고요. 그다음에 안보·전략적인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할 때 상용화가 우선시되는 그리고 상용화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을 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 중요성보다는 결국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에 있어서의 유리함이 훨씬 더 실무적으로는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은 복수 기관의 평가를 거치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되면 1개 기관의 평가만 받아도 상장이 가능하게끔 그런 제도적 우위가 실무에서는 훨씬 더 작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사실 작년 우리 소위에서 확정을 해서 더 넣은 업종들이 더러 있거든요. 여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국가전략기술에.

정일영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저는 차관님이나 실장님의 설명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거꾸로 양자컴퓨터 추가가 정부안으로 나왔어 봐요.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겠어요? 사실 이것은 정부안으로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안으로.

지금 이 법안이 뭐니까? 조문을 보면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개발, R&D,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연구개발비.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상용화가 안 돼서, 덜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안 돼서 안 된다. 연구개발하는 건데 꼭 상용화된 다음에 연

구개발을 해야 됩니까? 상용화되기 전의 연구개발이 더 중요하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R&D 안에서도 초기 단계가 있고 실용화 단계가……

○**정일영 위원** 아니, 제 얘기 다 들어 보시고.

그리고 재정에서 얼마 넣고 있으니까 세액 공제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뜻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 세액 공제만 합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하잖아,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양자컴퓨팅, 양자컴퓨터 추구하는 데 재정 지원 즉 하고 있으니까 또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여기 추가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언제 쫓아갑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2018년부터 법도 만들고 종합지원체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고 백악관에다가 양자이니셔티브위원회 구축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 가고 있지 IBM 구글이 앞으로 다 거의 노미네이팅하게 생겼는데. 이런 때 양자컴퓨팅을 해야 각 첨단산업이니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걸 양자컴퓨터 갖다 놓으면 시간을 100배인가 얼마 엄청나게 단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전략기술에 포함해 가지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 그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그거 참 이해할 수 없게 반대 많네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영석 위원님, 다음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일영 위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숫자로 어떤 계량적인 지표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윤영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액 공제율이라든지 또 정책 지원하는 것들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또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신성장 또 원천기술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부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첫째로는.

사실 양자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버금갈 정도로 국가의 미래나 또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기술이야말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을 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말씀 들어 봐도 경쟁력이 12개국 중에 최하위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최소한의 우리 국가전략기술에 버금가게 그러한 것을 격상시켜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다변에 있는 우주항공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자컴퓨터만 얘기 많이 했는데? 같은 의견이시다 이거지요, 전반적으로?

○김영환 위원 하나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게 이럴테면 수소 쪽 국가전략기술 보면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들어가서 에너지·환경 분야의 발전시스템 보면 대형 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 둘 다 친환경에너지 기술 쪽인데 기술 난이도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지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고, 물론 그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의는 하겠지만 저는 이해관계도 많을 거라고 봐요. 정말 이해관계가 많을 거예요. 대기업 집단의 이해관계가 특히나 더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분석과 외부 평가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분, 경제 그리고 기술 집적도 그다음에 시장 상황, 경제적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동향 판단 이런 것들의 종합적 판단이 다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재부는 시간을 두고 심층 연구를 해서 연구가 완료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따로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라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공제율 상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인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R&D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조세지출은 4조 3000억 정도—2026년도 전망 기준입니다—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R&D 세액 공제율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논의할 때도 현재 상황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견 경우에 점감 구조, 점증 구조를 또 고치셨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집행하는 세율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제가 OECD에서 최고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수감이 저희가 볼 때는 한 해 50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55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세액 공제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관련한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되었고, 개정안 중에는 지역 관련 세액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5%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이고, 구자근 의원님 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20%p 상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57페이지입니다—2021년 7월 국가전략기술을 도입한 이후에 최근 공제율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점에서 재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셋째 부분입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 구조가 도입되었으므로 감안해서 공제율 구조도 설계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는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부터 논의하는 건 R&D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화 시설이나 투자와 관련된 공제율입니다. 이것도 기술별로 나눠서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23년에 저희가 대기업을 6~15% 그리고 중소는 16~25%로 왕창 올리면서 그때부터 주요 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최고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제율 상향은, 여기 예정처의 세수감 보시다시피 규모가…… 현재도 굉장히 많은 세수지출이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연장하는 건 이미 29년까지 돼 있는 것을 아직 도래하기 전에 추가로 더 연장하는 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 대한 공제율 상향도 사실은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간에 계속 논의했듯이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수도권, 과밀지

역 내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이미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발의하신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사실 국가전략기술도 첨단기술, 이런 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기재부와 또 정부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을 늘리는 것이 맞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도 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27년에 종료된다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 단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사실 지금 경쟁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이런 세액 공제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또 강조를 합니다마는 지금 비수도권 특히…… 현재 그래도 충남지역까지는 조금 낮다고 해요. 아닙니까?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호남 또 영남지역, 강원지역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반짝 어려운 게 아니고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어 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국가전략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전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입니다. 세제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부처 이전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하고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이 기업 이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첨단산업 또 국가전략기술산업 이런 것이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세액 공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비슷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님, 어제 정태호 위원님도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재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R&D 투자세액 공제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사실 작년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윤영석 위원님이 강조하신 지방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안 보고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6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향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경제 여건의 악화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69페이지입니다—2024년도 세법 개정에 따라서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추가 공제율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그 말 자체로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투자가 힘들다 싶을 때 한시적으로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했다가 없었다 했는데요. 23년부터 해서 25년까지여서 이번에 종료를 하고 다음에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거지 임시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임시가 아니더라는 의미에서 제한하고 싶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설비투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투자 부분을 굳이 추가로 임시적으로 더 늘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임투를 건드렸지만 적용기한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연장하지 못했는데 자칫하면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기재부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단어가 임시라고 그래서 임시투자니까 3년 지났으니 일몰하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 기업의 투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려울 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작정 종료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이 금년 말에 종료되는 것인 만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 자르듯이 딱 정리하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재부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임시라고 다 임시가 아닌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73페이지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건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해서 기업 규모별로 20~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문대림 의원님 안은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30%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76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이 되어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유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신성장·국가전략 이래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해서 특별 시설만 이렇게 딱 별도로 브래킷하는 건 이 체계랑 맞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면 신재생에너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소면 국가전략이고요 나머지 태양열, 풍력 이런 거면 신성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수준에, 상용화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의 설명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84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 공제와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R&D 투자 또는 설비 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가 필요한 기업 등 동 세액 공제를 지금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이월공제 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해 준다면 세액 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일괄해서 확대되었다는 점 고려해서 제도 시행 경과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기업 이월공제를 10년으로 늘린 게 21년에 늘렸는데요 이거를 추가로 20년까지 늘리는 거는 특정 분야만 짚어서 늘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

히 긴 세월의 이월을 갖고 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월공제 내용에 보면은 옛날에 묵은 것부터 먼저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10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년을 추가로 더 늘릴 만한 사유를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10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89페이지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3건입니다. 3건 각각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인공지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인선 의원님 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금액 및 운영비의 7%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만큼 공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정아 의원님 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각 기업 규모별로 해서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91페이지입니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서 AI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고 그리고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92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한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 35%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황정아 의원님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반도체 분야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정의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도입이 된다면 명확한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어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전략기술로 막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과밀지역에도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AI 센터만 한다는 건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후부에 의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전력량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더 적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감안할 때 수도권

과밀지역 허용하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투자 비용은 원래 공제하는데 운영비까지 공제하라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원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손금은 됩니다. 손금산입 되는데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해 달라는 건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공제율 상향도 아까 전에 이미 논의했듯이 저 이상 공제율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제 시행령에 포함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AI 관련해서요 5개 분야,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9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요. 저희가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다섯 가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하겠다고 했고 그거를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이런 것들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로……

○소위원장 박수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35% 세액 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최대 35%?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35%는 지금 우리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그 세율, 그걸로 감면율을 적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 자체는 계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머지 연구는 기재부에서 해 주시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지출 비용에 대해서 25%의 소득세,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법인세법 조특 개정안 심사시 논의가 되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세액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에는 최근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의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해 주던 거를 추가로 5년 더 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를 하는 건데 그에 더해서 판매 단계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세수감을 보시면 5년간 한 3600억까지도 추정되는 규모이고요.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것까지 하는 건 좀 어렵고 저희가 하는 건 공공기관의 경우에, 공공기관은 이거를 좀 사 줘라라고 해 가지고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적정하고 오히려 앞서 말했던 법인세 혜택으로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부분은 잠정 합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나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이거는 파는 물건을 산 사람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 사실 생산 쪽에 법인세를 해 줬다면 사는 사람도 해 주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인데 기재부는 세수감이 크다고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세수감도 크고……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때 이걸 강하게 주장하셨던 최은석 위원님과 정태호 위원님이 지금 하필 자리에 안 계신데……

○김영환 위원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일단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 또 추가적으로 연장했잖아요. 그 세수감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게 생산 코스트를 다운시켜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판매 지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 일단 법인세, 소득세 감면 주이 보고 그 이후에 표준사업장들 조사를 죽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경쟁력이 좀 올라오는지, 매출 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저는 상황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는 김에 다 해 주면 아주 좋겠으나 세수감이 큰 상황에서 계속 두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주기는 좀 어렵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기재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특례와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동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업권 및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과세특례 적용대상 유형은 표로 제시를 하였고요. 직접투자 방식이 있고 외국법인의 지분취득 방식이 있고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동 제도는 2007년에 도입돼서 2013년에 일몰이 된 바 있고 이 제도가 2024년도에 다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상향을 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또는 삭제하는 안입니다.

1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외국자회사인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면 현행 제도하에서 수입배당금액의 95%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13년 만에 종료를 했다가 23년 말에 다시 도입해서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성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막 시작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윤영석 위원 해외자원개발 투자, 자원개발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대규모로 투입이 돼야 되고 또 탐사·개발·생산까지 한 10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들, 해외의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자원개발 회사들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자원개발은 보통 보면 거의 한 40% 이상이 투자비 회수나 또 사업적 기척이 없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일단 일몰을 이렇게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문제가 있고 최소한 한 5년, 10년 이상은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내국인 단독으로 100% 지분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이것도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같이 합작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전제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 단독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책사유 없는 탐사 실패일 경우에 공제액이나 가산세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공제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3년 말에 할 때 3%로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향을 논의하기에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평가를 한번 보고 나중에 판단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외국자회사 요건에 내국인 100% 직접출자는 그 당시에 24년 정기국회하고 25년 그때 하시면서 둘 이상 내국인 공동출자를 여기 소위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 소위에서 그때 논의한 거를 어떻게 하실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기본적으로 광업권, 조광권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하는 투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정제련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 사실은 이미 외국법인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추가적인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세금으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거를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경의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24년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올해 말까지 하면 2년간 시행한 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내년까지 해야 3년……

○**소위원장 박수영** 내년까지 해야 3년인데 24년에 시작했는가요? 24, 25, 26, 26년까지 하면 3년 해서 일몰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외국 회사하고 합작한 경우에 관한 부분 우리 소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정부 측에서 아마 건의한 대로 결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때 정부안으로 나왔었고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아야지 갑자기 왜…… 원래 100% 가지고 있는 것만 해 줘야지 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까지 해 주냐는 지적을 하시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가지고 그때 논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지금은 아마 입장들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희귀광물에 대한 인식이 또 많이 높아졌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안건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다만 적용기한이 26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적용기한을 더 길게 연장하는 것—투자 회임기간까지 생각할 때—그다음에 외국자회사하고 합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업계의 관행 이런 것들을 감안

할 때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종료되기 전까지 내년 중에 빨리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관련해서 다부터 라 항목을 같이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항목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128페이지 주요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4년 2월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업무 관련 경비로 손금산입 범위에 출산장려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202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출산 장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 또 신용카드 할 때도 추가로 자녀당 한도도 늘렸고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하고 예산에서도 보육수당을 8세 이상부터 15세까지 늘린 점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만 관련해서 보면 근로자가 받을 때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도 저희가 조치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주면 기본으로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세액 공제까지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일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마는……

○정일영 위원 발의는 했는데 입 아프게 설명해 봐야 되지를 않으니까 힘 빠지는데, 이따 종합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니까?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200년인지 하여튼 뒤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다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다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팡팡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지급한 기업, 돈 받는 종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노동자가 아니고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이렇게 하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단칼에 다 잘라 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

고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 기회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합계 출산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부터 조금씩은 반등되고 최근에 출산아 숫자가 계속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출산이 늘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인식의 변화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한다면 결국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이 제도 활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주게 될 텐데 대기업의 경우에 이거를 손금산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받게 되고 또 40%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면 아마 한 60% 이상을 국가가 돌려주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전문위원님, 중요한 거는 꼭 세수효과 추정 안 하거나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참 이상해요.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직접 추계를 하고 있지 않고 정부 추계안이나 아니면 예산 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채택될 만한 건 예산추계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세수 감소가 엄청 크게 나오고…… 논의를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부영 사례를 들어서 한번……

차관님, 1억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면 현행 제도하에서 전액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근로자 입장에서요.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성훈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또 다양한 예산 재정적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효과들을 좀 더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진행을 하셔도…… 물론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라는 재정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부영 사례 때문에 손금산입과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이걸 해 줬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시는데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차관님이나 기재부에서도 잊지 마시고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1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38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40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그리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의 유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공급망안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이 공급망안정화법 자체를…… 이게 방법론이 먼저 해결되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방향은 긍정적인데 법을 기다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법 통과되면 그때 가서 시작,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공익적 성격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법안 통과되면 이것도 바로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14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출연 부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자체 재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5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첨단산업기금은 빨라야 2025년 12월 초에 출범 예정이고 기금의 재원 조성 정도, 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유사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서 이 부분은 손금산입 허용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래간만에 동의를 하셨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게 정부안인가요? 정부가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까? 법안은 이 소영 의원님 안인데……

○소위원장 박수영 답변을 못 할 상황인 모양입니다.

○박성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박수영 의원안도 정부안이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닙니다. 제가 낸 겁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어떤 분은 죽어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히 된다고 그러고, 뭐야 이게 도대체가.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잠정 합의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화주기업과 내항선사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운송계약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인데 각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내항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님 안은 화주기업이 3년 이상 그리고 5년 미만 운송계약의 경우 3% 그리고 5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친화선박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내항선사가 환경친화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의 선박을 제 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내항선사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 금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내항선사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장기 내항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내항선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연안 화물선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대체를 장려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및 선원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내항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관련 특례를 도입한다면 장기운송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련 사후추정 규정이라든지 적용기한 설정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내항선사와 관련해서 단기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든지 낮은 운임단가와 같은 부분을 세제 지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질서도 먼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계약을 한다면 그걸 다 어떻게 누가 팔로우업할 것인가를 모르면 세제 지원이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박 현대화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억 정도 연안선박에 대한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내항선사 대상으로 우수한 선화주를 관리하는 시스템, 어떻게 하면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감독체계나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는 그 상황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다. 지난번에 포워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스템을 부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시스템을 해 줄 테니 도와줄 수 없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된다면 그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바로 이렇게 세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답변 안 하신 게 환경친화적 선박인데요. 내항선을 보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배들이 지금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에 다니는 배들 보면 항구가 있는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상당한 오염원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친환경선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30%까지 보조금 지원이 있지만 세제 지원도 더불어 해 준다면 열악한 내항선사들이 빨리 더 좋은 친환경 배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아까 재정 지원으로 현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은……

○소위원장 박수영 현대화하고 친환경선박하고 같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대화라 하더라도 그대로 중유나 석유를 쓰는 내연기관으로 가게 되면 친환경선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된 사항은 아닌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안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오셨는데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셔서……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화물선 현대화 펀드 출자 및 신규 건조를 위한 은행 대출분의 이차보전이잖아요, 이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이차보전이면 대출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318억이면…… 이차보전은 보통 몇 % 해 주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보통 이차보전을 2% 해 준다고 하면 역으로 환산하면 6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그냥 저만의 그것이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정도,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정확한 그건 모르지만 연안선박 현대화와 친환경을 동시에 지원하려고……

○**김영환 위원** 현대화는 뭐고 친환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에 포괄하는 내용에……

○**소위원장 박수영** 현대화는 새 배로 바꾸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새 배로 바꾸는데 요새 새 배로 바꾸면 보통 친환경선박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요, 사업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현대화는 새 배로 바꿀 때만 이차보전을 해 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사업……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선박 보급 촉진 사업은 별도 재정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에는 모든 배를 다 넷제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만일 거기에 미흡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거래권, 배출권 거래제처럼 선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라는 게 한 번 건조를 하게 되면 수십 년씩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연안어업, 연안선사들만 보더라도 한 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70만t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친환경선박과 관련해서 조특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선사들과 업계의 요구사항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은행의 대출보증일 필요한데 지금처럼 연안화물선사가 1년 단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화주는, 대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부분이 대기업이겠지요.

어떤 계약을 요구하냐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가져와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 단위의 단기운송계약은 화주, 대기업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새로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선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걸 정부가 지원책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업이 굉장히 공동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 주십사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연안화물선이 현재 국가기간산업 물자를 운송하고 있는, 수송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상 해양수산부차관을 역임하신 박성훈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차관님이나 실장님, 이 법안에 대한 취지에는 다 공감하시지요? 꼬덕꼬덕하시는 건 다 공감하신다는 뜻으로 그러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여러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석 위원 다만 재정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지금 재정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연안선사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아마 일부 해결은 되겠지만 장기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게 연안선사들과 화주 간에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실은……

지금 연안선사와 관련해서 이 중요성을 아마 체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이게 국내의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연안선사들을 통해서 운송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그 실상을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여기 다들……

김영환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면서 다 듣고 계시지요?

○김영환 위원 목이 아파 가지고, 목 디스크 때문에.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짧게……

○소위원장 박수영 역시 항만을 가진 인천 출신의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도 항만 근처에 있고 태어나기도 근처에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항해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세액 공제, 최은석 위원님이 발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해수부에서도 잠깐 근무했었지만 환경친화선박 이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 법안이……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부,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인가? 뭔가 하여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참 갑갑하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기재부도 재정만 있으면 다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차관님은 바쁘실 테니까 아마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간담회도 한번 해 보시고, 정 없으면 저희 지역구로 오셔도 됩니다, 항구가 많으니까. 거기 가면 냄새가 말이지요, 매캐한 석유나 중유를 쓴 냄새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고 비 오는 날에는 비가 까맣게 내립니다. 매연들이 비구름을 타고 와서 아파트 단지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선박의 도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이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의 엄청난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1월 달 안에라도……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끝내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취지를 이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단가, 단기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낮은 운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수 포워더기업 그 시스템처럼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세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나중에 사후관리상 문제가 없게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가 진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제도를 관리하고 저희가 이 세제 지원이 정말로 연안 부분에 장기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를 그 제도 갖춰지면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가지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해당 부처에서 제도를 잘 구축해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은석 위원 해수부에서 그것 관리하는 시스템만 오케이하면 기재부는 다 수용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대로 수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박성훈 위원님, 해수부 정리 좀 하세요.

○박성훈 위원 전재수 장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지만 여기 있는 대로 장기운송계약에 대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은석 위원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다들 확약하신 겁니다.

○박성훈 위원 지난번 포워딩 시스템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해수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랑 협의를 하면……

○박성훈 위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기재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해수부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우선 기재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요. 항구도 없는 대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 CJ대한통운 그때 인수하면서 연안해운선사들의 어려움 같은 것, 왜냐하면 이게 장기운송계약이 없으면 배를 진짜 건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소위원장 박수영 현장의 얘기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항구를 끼고 있는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은 해수부차관 경력이 있으시니까 해수부에 압박을 해 주시고, 간사님은 전재수 장관님한테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재부도 이제 예산권이 없어서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챙겨 봐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좋은 제도 만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일영 위원 제가 갑갑해서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양자컴퓨터 자료 요구…… 도대체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50%만 이해가 돼 가지고 긴가민가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R&D를 하는데 상업화가 안 돼서 안 된다.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니까 안 된다. 나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점심 때까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나랑 토론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전체회의든 어떤 회의석상에서든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주장을 할 테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회의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의원입법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거의 90% 이상이야. 전문위원님, 쉬는 시간에 통계 한번 내주세요. 내 생각에 1%밖에 안 돼, 1%.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입법 뭐하러 합니까? 우리 뒤에 앉은 보좌진들, 보좌관들은 왜 일합니까? 전부 99%가 다 그냥 세제 실행하고 차관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아니, 적어도 기재위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면…… 보니까 관계기관, 관계부처도 있던데 성의 있게, 해수부든 어디든 관계기관들도 오라고 그러든지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특구니 이런 것도 자신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어제는 보니까 유산취득세는 준비도 안 됐는데 가져와 가지고 오전 내 그냥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것 가져와 가지고 오전 내내 우리 위원들하고 결국 되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의해 놓은 것 다 받아들일 수 없다. 99%야, 내가 대충 계산해 봤지만. 그러면 보좌진들이랑 우리는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좀 발상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든지 국민들한테 경제에 보탬이 된다 싶은 것들은 기재부에서, 위원장님이 1월 2월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 안 된다, 고민하겠다, 백날 고민해 봐야 뭐가 나오니까?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의 있게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주십시오. 데이터 요구한 것 아직 아무것도 우리 손에 안 들어오는데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지난주 것도 하나도 안 옵니다, 하나도. 자료하고 통계를 정확히 주시고요.

답변도 의원님들, 보좌진들 수고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차관님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재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 15분, 20분 돼 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실장은 어디 보고하러 갔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 없이, 차관님이 잘하시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14번 항목이고요.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관련 개정안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제도 관련해서는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부터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외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존 기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사업장 증설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인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특별제한법상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경감 규정이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만 사업장 증설 기업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을 하려면 증설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세액감면을 참고해서 관련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거나 신설할 때 저희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특구로 오면 그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창업하면 5년간 100% 또는 이전하면 10년간 100%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 다음에 중간에 추가적인 증설,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계속 논의했던 투자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지원하고 국가전략 기술인지 어디냐에 따라서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구 안에 서 증설만 했다고 해서 추가로 세액을 더 감면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증설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하…… 실제로 투자가 는 부분에서 투자세액 공제가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알파를 또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투자세액 공제는 처음에 신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회발전특구 이것도 해당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투자세액 공제도 같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신설할 때는 5년간, 창업하면 5년간, 이전하면 10년간이 작동이 됩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둘 다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신설은.

○최은석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 박수영 둘 다 되는 게 아닌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잠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경우의 세액 공제와 그다음에 통합투자세액 공제 중복공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게 되면 최초 5년간 100%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면 기간 동안에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중복공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하고 2년 사이에 증설하게 되면 창업할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최은석 위원님 질문은 5년 동안은 100%, 플러스 2년은 50%인데 100%일 때는 당연히 100% 되는 것이고 플러스 50% 하는 기간에 증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어떤 게 있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증설을 하게 되면 5 플러스 2 감면 기간 동안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5 플러스 2가 지나서 증설하게 되면 감면은 없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석 위원 지금은 신설만 있고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감면 기간 안에서는 감면이 되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모든 소득의 50%를 깎아 주니까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래서 감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소위원장 박수영 법인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법인세 자체를 깎아 주니까요.

○오기형 위원 법인세 자체가 아예 제로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법인세 자체를 절반만 내게 되니까……

○오기형 위원 세액 공제 논의가 무의미한 거지요, 5년 동안 완전 제로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5년은 제로고 그다음 플러스 2년 때는 증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0% 감면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최은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당되고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은 정부 설명이 맞다면 법안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의원님 안은 그것 지난 다음에 해 달라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위원장 박수영 7년 이후에?

○최은석 위원 예, 추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 이후는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희는 그 이후에는 투자세액 공제로 작동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석 위원 이것 잠깐만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게 내용 조금만 더 확인해 보고……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기재부 답변에 대해서 최은석 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소위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감면대상으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감면을 하는 내용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처분 시까지 이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말에 일몰 예정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나 정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몰이 26년 말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논의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구요. 그리고 일몰기한을 5년으로 제안하셨는데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이 계시는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기회발전특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단행하려고 하는데 투자라는 것이 딱 1년 동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삼사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향후 자기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세액이 얼마나 감액이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계산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IRR도 나올 것이고 내가 얼마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그런 예측가능성에 입각해서 투자 의사결정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장래 예측가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기간을 감안해서 삼사 년 정도 미리 연장시켜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몰 앞두고 심층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가 없이 결정되는 사항이라 조세지출제도 운영의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몰 다 되어서 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SOP 같은 것인데 투자에 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IRR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재부에서도 한번 기존의 관행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투자니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소소위 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167페이지의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신설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항공우주 및 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취지고 관련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166페이지 부분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R&D 부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202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특구 16개가 지금 세제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생길 때마다 계속 세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까지 있는 특구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시나 도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존(zone)에 대해서. 광역시는 최대 150만 평, 도는 200만 평까지 의결하면 정하고요. 부족하면 추가로 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초과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안은 우주항공 분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기회발전특구상에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놔두고 또 새로운 특구로 만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법률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법률 통과할 때 조세특례는 조특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원래 법률에서 삭제했다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투표할 때 이 부분이 감안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 삭제한 부분은 조특법에 규정하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지금 본회의 의결안에서 삭제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하기는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원래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 규정이 삭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166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삭제한 이유가 조특법에 규정해야 되니까 기재위에서 검토하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번에 통과할 때까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법을 통과한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아니면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개별 법률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회 권한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입장을 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의한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차관님, 차관님의 해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라 이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안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안에서 제안한 것보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지금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아마 경상남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냐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사천이지?

○**김영환 위원** 경남 고성·통영·창원·밀양·하동·창녕…… 기회발전특구 사천 없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없으니까 지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천하람 위원** 그런데 면적이 남아 있어야 할 수……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한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적 초과 허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게 찼는지 안 찼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시고?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그것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민국 의원안에 따르면 사천이라는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사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차관님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은,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강민국 의원안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 법안을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중복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강민국 의원안은 사천이 배제되어 있으니 이 법을 통해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강민국 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의원님도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그렇다고 이게 당장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의 17번 항목이고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의 항목이 제안되어 있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여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훈 의원님 안과 박수영 의원님 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고,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안은 같은 법인에 대해서 주주환원 금액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직전 연도 시장 평균 주주환원 성향의 120% 그리고 140%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의원님 안은 코스피·코스닥 이외에 코넥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배당금액의 10% 세액 공제를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의 나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증가금액 일부에 대해서 손금 산입을 허용함으로써 납부세액 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주회사의 세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의 주가부양 효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다수 발의가 되었고요. 관련해서는 현재 배당 분리과세 개정안과 기업 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배당을 추가하는 법안과 연계해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법안은 24년에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했었습니다만 국회의 작년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센티브보다는 기업가치 제고나 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마 계류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의 개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그 논의와 이 논의를 함께 보시면 현재 많이 논의했던 것으로도 효과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과 천하람 위원님 계신데 혹시 두 분 중에……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되는 거지요.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주환원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박성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 저나 이인선 의원님의 문제의식은, 다른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늘리느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인데 그랬을 때 기존에도 시장 평균의 배당성향에 비해서 잘하고 있던 기업들이 조금 역차별을 받을 우려들이 있어서 저나 이인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 평균 주주환원 성향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차관님, 발의하신 두 분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기업에도 여력을 주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받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도 혜택이 있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우리 정책목표가 더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번에 전반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부안을 들고 왔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는 함께 논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김영환 위원 얘기하면 돼요?

○소위원장 박수영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반대되는 의견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아니요, 자유롭게 말씀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당소득 0.1%, 1%, 상위 10%가 50%, 70%, 93%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어서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상위에 집중되지요. 다만 간접적인 효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로 갈 것이라든가 그 기대효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법인세까지 혜택을 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하나면 법인소득이 세이브 되겠지요. 그게 배당소득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까지……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하더라도 세수효과나 배당성향이 늘어나는 그 효과나 혹은 그럼으로써 과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 이것으로 과연 주식시장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 것인지 이걸 엄밀하게 평가를 하면서 가자, 조세지출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얘기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정말 배당이 늘어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지를 보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이런 조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까지도 함께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없어야지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없애 버려야지요, 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지요. 무조건 없앨 게 아니고 일단 살려 봐야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조특 법인세는 마지막 건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특 국세기본법 분야입니다.

185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국회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보면 사후관리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평가의견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평가 특례제도는 그동안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 심층평가보고서를 보신 것과 같이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이 조세감면 평가의견서를 제출할 때 개정안은 관련 조세감면의 필요성이나 조세 목표의 달성 시기 그리고 세수감소의 보완대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나 포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례와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 근거 등을 작성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각 부처가 감면 연장을 요청할 때 조세감면 조치의 필요성이나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보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조세감면 평가의견서 제도가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을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최근 국감에서도 그리고 관련 회의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 심층평가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기계적인 일몰 연장이 다수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자율평가 제출, 각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할 때 단순

히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 외에도 필요한 이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세수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 부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심층평가와 관련된 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매년 300억 이상 조세지출이 일몰 됐을 때 의무적인 심층평가는 현재 국회에 세법 개정안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해서 세법 개정안의 활용 여부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건의 평가가 있는데 27건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심층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다시 제출을 하라는, 저희는 이미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의무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마지막 부분의 신중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저희가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적 근거를 갖고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라고 하면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반영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반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층평가 결과가 굉장히 브로드(broad)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제출하지만 반영 여부를 법정 서류로 제출하라는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 설명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앞부분은 기재부장관이 법무부장관한테 요청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안입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정 합의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5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서 5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정부지출에 대해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99페이지에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 추계기간이라든지 보고주기에 관한 자료를 실었고요. 그리고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 사례를 보면 조세지출보고서를 매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방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서 5년간의 추

정액을 산출해서 중장기 재정 전망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법 개정안에 그 다음다음 연도 추정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지출 추정치를 제출할 때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반영이 바로 추정치로 산출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5년간의 그 기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개정안인데 실제 그 개정안의 내용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간을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그리고 당해 연도 그리고 그다음 2개 연도로 해서 추정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의 기간 대비는 일대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취지는 5년, 예산 쪽의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추자는 취지인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예산은 내년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안은 과거 2년, 내년 2년 해서 시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문제는 내년은 괜찮은데 그다음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추정이 제일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 내년을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추정할 시점이 올해 같으면 6월까지 들어온 조세지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올해치를 추정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탄성치나 경제지표를 넣어 가지고 확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 보면 대충 5% 정도의 오차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2년 뒤를 예측하라 그러면 탄성치 전망 전체 자체가 당연히 더 오차가 커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낼 세법 개정안이 그다음 해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년에 낼 세법 개정안을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다음 해를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아마 그때쯤 되면 그때 예측한 게 굉장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로 인한 게 과연 저희한테 추가적인 도움…… 추가적인 혼란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그러면 직전 2개 연도 이거는 괜찮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이미……

○최기상 위원 그런데 다음 2개 연도보다는 다음 연도 정도 그대로 놔두고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실 조세지출결산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에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감면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비일관된 조세감면 항목의 운영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서 조세특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 공제·우대세율 적용 등 해서 조세특례의 내용을 다양하게 열거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무엇이 조세특례인가에 대해서는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뿐만 아니고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지금 도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조세지출이 무엇인지, 조세특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운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좀 복잡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자라는 제안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그걸 위한 내용이 조금 더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결산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기재부가 받고 그다음부터 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조세지출의 경우에 문제는 종합소득세 정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기 때문에 실적 집계 6월에 됩니다. 이미 시간을 초과했고요. 그 6월 이후부터 검증을 해서 최대한 서둘러도 만만치 않은데, 작년에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주셔서 가지고 최대한 서둘렀던 게 올해 8월에 국회 결산 심사할 때까지는 내자, 정부가 9월에 내는 건 너무 늦지 않냐 해서 올해부터 8월에 사실은 결산심사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5월 말까지 의무화하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그거를 위해서 조세지출 전수조사 부분은 저희가 21년에 한 번, 20년에 결산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세지출이 빠진 거 없냐라고 해서 12개 항목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매년 다시 한 번씩 전수하자는 거는 저희로서는 부담이…… 실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계기가 돼서 할 수는 있겠으나 매년 이거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온실가스 관련된 거는 사실 매년 조세지출할 때마다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하기보다는 심층평가할 때 온실가스 부분을 담아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제안하신 김영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할 말 많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일단 차관님,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결산할 때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재정지출은 결산이 있는데 조세지출은 결산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보냐면 기재부가 예상하는 세법 예상 경로를 따라서 조세지출 예산서만 보게 됩니다. 그거는 향후의 거예요.

조세지출에 대해서…… 보세요. 이번에 세법들 다 여기 놓지만 조세지출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세법 논의조차도 다 허황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감면제도가 어디까지 있는지, 심지어 추정도 못 하는 조세지출이 많아요. 해외 자회사 익금 불산입제도, 조세지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현장에서 모르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열거해서 우리가 추정하지 못하는 조세지출까지 결산에 담아서 다 정리를 해 봐야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지출이 얼마나 예산지출이 얼마나 조세지출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 결산을 논의해야, 예결위 올라가면 조세지출은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 볼 때 조세지출예산서? 어떤 위원들이 조세지출예산서 보고 질의하는 포인트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이 80조가 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시점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국세청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3월이면 가능하대요. 임시적으로라도 가능하대요. 자, 5월이라고 합시다. 소득분위별로 평가한 것도 한 달 반 만에 우리 의원실에서 한 겁니다. 그 똑똑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또 수많은 기관들을 같이 용역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재부가, 저희 의원실은 한 달 반 만에 했거든요, 소득분위별로 조세지출 귀착효과를. 기재부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월에 끝난다 한들 통계는 다 들어올 거고 거기서 잡혀서 최소한 한 달 반이라도 하면 예결위 할 때는 조세지출결산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 예결위 보통 8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자료 보고 의원들이 그때부터는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봐요. 얼마나 엄밀하게 이걸 하느냐 이 차이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최소한 전반적인 조세지출 현황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재정지출과 함께 어느 파트들에 관리를 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지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는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기 때문에 안 된다. 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물론 어려움과 고단함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법안에 대통령께서 대표 때 유일하게 사인한 법안입니다, 다른 법안 사인도 안 했어요.

기재부차관님, 우리 국회를 존중해 주셔서 현재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야당 되셨잖아요. 야당 위원님들께 조세지출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출해 주고 함께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하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렵고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테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예산서와 비슷하게 아우트라인 잡는 거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무자들이 되나, 안 되나를 더 잘 알 텐데 누구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과장이 추가적으로……

○소위원장 박수영 예,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실장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100% 공감되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당연히 12월 말일에 정부 기관들이 결산을 하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조세지출이라는 건 민간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출발점이 한 3개월 뒤 늦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이 감면을 얼마 받았는지를 법인세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일단 출발점이 늦고.

아까 국세청 이야기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국세청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조사와 관련된 걸 받고……

○김영환 위원 그건 5월이잖아요, 종합소득과세도 5월이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받는 조세지출 항목이 한 280개쯤 되는데 한 195개쯤이 5월, 6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그나마 저희가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래 예산안 제출할 때 하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였는데 그거를 한 2주 정도 최대한 당겨 가지고 최소한 결산 심사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맞춰 보자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드렸는데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산서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결산이라는 숫자는 먼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안 나와서 결산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산 숫자하고 예산 숫자는 좀 다른 것인데 결산 숫자 자체를 조금 더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작업하기 전에 결산 부분만 따로 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결산에……

○김영환 위원 한 달은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산이 안 나와서 예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산 때문에 늦는

다고 그러면 예산 작업을 좀 늦춰서라도 결산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김영환 위원** 차라리 저한테 용역비를 주세요, 내가 다 해 드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예결위 심사할 때까지는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올해 한 거거든요. 예결위 할 때 기재위 예산소위 심사 때 저희가 드렸던 게 8월 20일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위원들은 최소한 결산 심사 할 때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대로.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 그러면 실제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게 8월 보름쯤 되면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8월 20일경……

○**오기형 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결산서 자체는 지금 그렇게 제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항상 저희는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에 지난 실적과 내년도 전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결산서라는 것이 작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항목별로 다 같이 모든 항목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더 빨리 줘야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고요.

○**김영환 위원** 2주 전에 주면 예정처 보고서 못 나와요. 예정처가 결산서를 보고 또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고 그냥 기재부 의견만 주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기재부……

○**김영환 위원** 어렵지 않다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 얘기가 있고 어렵지 않다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그러면 조세지출결산서 부분하고 조세지출예산서·결산서에 대한 온실가스 영향평가 분석까지 같이 논의가 되서 가지고 그다음 안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보류예요, 계류예요? 뭐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 내신 법안이니까 저희 추가 논의하는 걸로 분류를 해 놓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결론을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쭙면 현재 결산서는 제출을 한다, 독립되게 제출 가능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오기형 위원 독립되게 제출 가능하다, 시한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근데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5월이나 6월이라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8월인데, 저희가 올해 작업을 했던 건 그래도 1~2주라도 더 당겨보자 해서 맨날 밤을 새웠었는데요. 그래도 예산서보다 먼저 결산 자료는 국회 결산 심사 시기에 어쨌든 맞춰보자 해 가지고 한 2주쯤 당겼습니다, 올해.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매년 독립적으로 조세지출결산서는 제출한다, 독립되게. 그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오기형 위원 시한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 이 문제고.

그다음에 조세지출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건가요? 매년 못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세지출결산서에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사실상 전수조사가 된 결과물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수조사는 것은 매년 모든 항목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조세지출 항목이나 아니냐를 봐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조세지출 항목 중에 보고를 안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년도에 국회에서 지적을 주셨고, 근데 사실 뭐가 조세지출이나 아니냐는 게……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 준다고 그래서 조세지출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탄력세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류세를 좀 깎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준조세체계라고 해 가지고 깎아주긴 깎아주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세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세지출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요.

OECD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든지 대체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저희가 21년도에 또 전문가들하고 한번 TF를 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2개 항목을 추가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새로운 항목들이 많이 늘면 몇 년에 걸쳐서 향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모든 항목을 조세지출이나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시간은 물리적으로 그렇다 치고 그런데 항목 자체가 어떤 게 누락됐냐 안 누락됐냐에서 실제 종래의 관행에 따라 했다 또는 일부 논쟁이 되는 것은 뺐다 이런 단서를 달면서라도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조세지출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수조사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담은 겁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서는 이것이 과연 모든 조세지출이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이해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의사진행발언.

○**최은석 위원** 부가세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154페이지 것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다 말씀 못 하셨나요?

○**최은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의결 안 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은석 위원** 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차관님, 기회발전특구 기억 나시지요?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기회발전특구 안에 대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사업장 옆에 추가로 더 증설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증설을 하면 감면기간 안에 있으면 절반까지 깎아 주니까 이미……

○**최은석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무래도 이게 담당국장이 좀……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담당국장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해 가지고 감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 플러스 2…… 아무튼 간에 감면을 받는데, 그 기간 중에 증설하게……

○**최은석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본래 사업장이 있었어요. 본래 기회발전특구 안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가 거의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에 거기에 해당 업종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장 옆에 좀 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격리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세의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감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예.

○**최은석 위원** 지금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면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맞습니다.

○**최은석 위원** 사업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구분·격리해 가지고 해당되는 만큼 전체 법인세와 관련된 감면을 준다는 게 지금 현재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래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전부터 그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던 회사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실은 사업장 신설하는 것과 경제적인 실질은 동일하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위원님 말씀 이해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경우의 안을 내신 거고 그러면 기재부 입장은 뭐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감면은 적용이 안 되고 투자세액 공제나 이런 것을……

○**최은석 위원** 아니요. 왜 감면이 적용……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러니까 본래 기업이 다른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지금 법인세 감면에 해당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당연히 되지요.

○**최은석 위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신설은 되고 증설은 현행법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석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투자세액 공제는 되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은석 위원** 투자세액 공제는 되는 거고, 저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현재 안 됩니다.

○**최은석 위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랑 동일하게 해 줘야,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인력을 새로 고용하고 있는 것들은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랑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A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 것을 했으니 전체를 깎아 달라는 말씀……

○**최은석 위원** 전체 아니고 해당되는 구분·격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장 신설 같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신설은 없다가 생겼으니 통으로 인정할 수 있지요.

○**최은석 위원** 신설을 여기 보면 기업……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는 공장이 있고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사업장 공장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회발전특구 이전부터 그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해서 추가적인 증설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해당되는 법인세 이렇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신설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따지기도 쉬운데 기존에 있다가 뭔가 늘렸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명백하게 구분·격리가 된다고 하면 또…… 그런데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는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문제인데요……

○최은석 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내에 공장이 하나 있다가 기회발전특구에 제2 공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법인으로 보면 당연히 구분·격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기회발전특구 안에 새롭게 투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계산되는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거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보면 1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2 공장을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공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미 본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 공장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세 감면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법의 취지로 보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1 공장 안에서 라인이 2개 있다가 라인을 3개로 만들었다면, 한 공장 안에서……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인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면 그것은 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은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구분·격리가 대부분은 쉽게 많이 될 걸요, 아마? 라인이라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물량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무슨 취지인지는 정확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라낼지가 사실 좀……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분만 가능하면 신설하는 경우랑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좀 더 지어서 확장해서 여기에 인력도 고용하고 추가생산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회피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설한 부분은 감면해 주고 기존 부분은 감면 안 해 주면 증설한 부분으로 물량을 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탈세의 관점에서만 보시지 말고, 정말로……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회발전특구 안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장 캐파를 확대하고 여기에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똑같이 주는 게, 거기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거랑 증설하는 거랑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전부 다 이해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발라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기재부 쪽의 얘기가 있었는데, 기재부 실무자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어떤 제한을 둘 수도 있지요.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지, 라인 하나 는 것은 기술적으로 발라내기 어렵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든지 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1월 말까지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기재부에 마지막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요.

차관님, 215페이지에 조문자료 보면, 결산서는 작성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기한 문제는 그렇게 최대한 맞추겠다고 하셨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에 제가 넣은 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전수조사가 있어요, 예산서에.

두 번째,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떼어내고,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3항을 보면 제가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려했던 전수조사를 떼어내면 결산서는 제출하고 조세지출결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면 시기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시기 문제까지 좀 조정해 주면, 그러니까 예결위 결산 시점 전까지는 결산서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상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조문은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도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김영환 위원님하고 기재부 간에 협의를 해서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217페이지, 부가가치세 분야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수선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일몰을 전제로 면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개정안은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도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한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잘 아시나요? 실장님 잘 아십니까?

설명 좀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부분은 LH가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 화장실이 고장 나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선업체를 불러서 수선을 시키는 경우 과세 업체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를 하자는 최기상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수선유지용역의 부가세 면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누구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부가세 면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영구주택 임대료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을 하는 업체가 부가세를 앞단에서 LH가…… 부가세가 면제돼 가지고 수선유지용역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못 받게 되면 수선유지를 위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도 매입세액이 묻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지금 부가세를 LH가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들이 낸다는 겁니까? 수선했을 때의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LH가……

○소위원장 박수영 LH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선유지용역 사업자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부담 안 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고시로 임대료 책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팩트 파인딩 됐고요.

법안 제안하신 최기상 위원님 납득이 되셨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최기상 위원 이 관련 법을 21대 때도 고용진·신동근·박대출 의원님이 내신 적이 있고요. LH에 물어봤더니 LH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한 140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 비용을 입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쓸 수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혀 왔네요.

그리고 현재도 국민주택 등의 일반관리용역이나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 혹여 적용기한이 없어서 부담스러우면 이삼 년 적용기한을 두어서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221페이지에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 대상 사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것도 실제로는 선언적 규정이다라는 평가가 더 많아서 이 부분이 도입이 되면, 저희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수선이 조금만 돼도 만족도가 매우 높고 끼치는 영향이 꽤

커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결국은 LH가 내는 돈인데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면 LH에 약간의 소득이 더 생기고 그게 입주민한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긴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선유지비는 따로 건축비의 얼마로 이렇게 딱 확정이 돼 있어서 손 대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지 조금 더 고민이 되는데요.

LH가 현재 3년간 계속 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이슈가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 LH는 돈을 아끼겠지요. 문제는 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안 내니까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비용은 나갔는데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LH에다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세입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도 또 저희에게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 생각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고품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중고거래사업자 부담 완화와 그리고 중고품 유통 활성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고품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도입하는 것이고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전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중고거래와 관련된 이슈이고요, 굉장히 여러 번 제안이 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품 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폰, 핸드폰 중고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또는 확장하면 다른

데는 안 되냐 이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봤을 때, 지난주에 한번 논의했지만 중고차는 그래도 자동차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실제로 얼마나 비용을 받고 거래가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공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도를 새로 규정해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매입을 신고하고 있다는 사항 때문에 이슈를 제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중고품은 어떨까 봤을 때 중고차만큼의 거래투명성이 있을까? 중고차만 되더라도 차대번호가 있어도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중고품은 어떻게 이 거래를 추적해 낼 수 있을까? 나중에 저희가 세금을 잘못 냈다면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질까를 보면서 몇 번을 들여다 봤는데요. 아직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안도걸 위원님이시네요.

○안도걸 위원 차관님 말씀 옳고요. 지금 중고차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의제를 해 주는데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핸드폰의 경우 신제품같은 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중고거래가 되고 있는데 80%가 다 음성적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양성화를 해야 되고 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기 위한 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지요. 5월 달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이 됐고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 거래 단계를 다 추적하고 또 기록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잘 작동하도록 세제상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고차에 적용되는 매입세액 의제를 해 줘야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양성화, 활성화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 그리고 중고차와 시스템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매입공제 의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 준다면 결국 부가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가격도 더 다운시킬 수 있고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고품이 자동차나 핸드폰뿐만 아니라 요새 K-컬처하고 관련해서 우리 한국 물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높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이 쓰던 물품이라든지 조금 비슷한 물품에 대한, 한국 물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단순히 자동차랑 단

말기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중고품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하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에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사업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사실은 과세 당국, 세정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악만 된다면 여기서 많은 세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제도 자체가 결국은 세금계산서가 출발이 되지 않으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세금계산서를 맞춰서 결국 얼마를 사고 팔았나 하는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요. 중고품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영수증 거래도 없고 보통 현금으로 하고 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동차등록원부도 있고 보통 개인, 이거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가 극히 일부 있지만 보통 자동차 딜러한테 가고 그러면 그때 자동차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추적도 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나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안도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휴대폰도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느냐, 올해 새로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라는 걸 했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거래를 추적할 만큼의 그런 부분인가.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은 원래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자체의 출발점이, 제가 휴대폰을 팔면 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넘길 때 개인정보를 다 지우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들이 많이 삭제가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도대체 얼마에 팔고 얼마에 샀고 그리고 계속 단말기가 추적이 돼야 되는데 휴대폰을 사고 팔 때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계를 넘기기 때문에 계속 추적이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안도결 위원님.

○**안도결 위원**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즉 그것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내용이 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도의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다 시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돼 있는 거예요, 실제 작동은 별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면 성능확인서,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확인서를 다 발급해야 되고 또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이런 의무들이 다 돼 있네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매입세액 의제 혜택을 받고자 하면 거래실적. 그리고 또 핸드폰 보면 단말기 나름대로 다 제품번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입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셨겠지만 정확히 이 제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고차시장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수출산업화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는 세제대로 따로 놀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말의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그거를 못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을 안 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 또 예상되는 부작용은 또 달리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쭙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을 중고물품 거래하는 업체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받았다.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15만 원에 팔았다 이러면 이 업체는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부가세는 위원장님이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중고물품은 대개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사실 추적이 어려운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파는 가격이 계속 추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 중고업자는 15만 원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얼마의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박수영 소득세도 있을 거고 부가세도 있을 거고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일단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품을 사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일단은 매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를 붙여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 판 금액 15만 원에서 자기가 사 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만 원을 주고 사 왔다고 하면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기재부 걱정은 저게 10만 원에 샀는지 5만 원에 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보통 신고를 아예 안 하지요. 굳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시고.

○안도걸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라는 게 그 제도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그걸 투명하게 모든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한 게 얼마나 기록이 남아 있느냐. 매입을 부풀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입

을 부풀리지 않을 만큼 잘 작동이 되느냐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 현재 안심거래에서는 그 단가까지 정확하게 남는 게 아닌 상황 같아서 걱정이 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제도 초기거든요. 현재 한 스물몇 개 사업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 굴러가는 건지 확인이 돼야 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이거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내년엔 25개라도 가서 장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자동차,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중고물품들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K-컬처와 관련된 중고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봐 주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중고폰은 그래도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예 인증제도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들여다볼지 훨씬 더 고민이 되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액을 100만 원 한도에서 7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에 관하여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원할 필요성과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할 필요성과 이러한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서 5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대 정도 나온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 시에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기준이 조금 다양한데요. 감면기간과 노후자동차 기준 등 감면 요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노후차가 축적되면 노후차를 계속 굴리지 말고 환경에 좋은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감면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 일단 종료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름대로 노후차가 시장에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감면 6개월 만에 다시 복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기재부, 조세 당국의 입장은 그렇지만 노후차를 빨리 줄여야 된다는 예를 들면 환경부나 환경단체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세제가 종료돼서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세제 당국의 입장이고 환경 측면에서는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친환경차량 개소세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럴 때는 300만 원까지, 전기차는 300만 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내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없어진 것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노후차.

○소위원장 박수영 경유차나 이런 것들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감면이 있고, 그것을 경유차량이나 석유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없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제도가 2개 있을 때는 2개를 다 활용했고요.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친환경차로 바꾸든 뭐하든…… 친환경차로 바꾸면 개소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노후차든 아니든 얼마 안 된 차를 바꾸든. 지금 남아 있는 건 친환경차량 개소세 감면이고요.

여기 논의가 되고 있는 건 한 10년 된 차를 바꿨을 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감면한도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튼 그런데 환경 입장에서 보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예를 들면 승용차를 대상으로 3번을 시행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년도에 했는데 이때는 교체 차량 대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차관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축적이 되고 노후차가 쌓여야 많이 교환도 하는데 자주 하다 보면 결국 10년, 물론 기간을 왜 10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노후차량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쌓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듣고 정부 측 답변 듣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실장님 그리고 차관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어쨌든 노후자동차 교체를 촉진해서 CO2를 줄이고 하여튼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판단을 하실 때 노후차의 교체 비율이 좀 떨어졌다. 노후차가 좀 쌓여 있어야 하는 게 좋다. 그것은 아니지요. 노후차가 한 대 있더라도 빨리 교체하게 하

는 게 이 정책의 취지 아닙니까? 노후차가 꼭 100만 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10만 대는 안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의 판단 기준이. 10만 대가 있는 1000대가 있는 빨리 교체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우리가 채택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차량교체 비율이 떨어졌다, 그리고 좀 쌓인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자꾸 양자컴퓨터 또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창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세요, 설득력 있게. 이걸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은 다른 것도 달리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테니 얼른 바꿔라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한 8개월, 20년에도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종료를 했거든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길게 가 버리면, 상시화돼 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 당시에 친환경도 있지만 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에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세제실장이 얘기했지만 한 38만 대가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7만 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하니까 3만 대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시성, 약속한 만큼 딱 끊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그때 이 기간만 들어오는구나 해서 싹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성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5년 이번이……

○**소위원장 박수영**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올해 상반기에 종료가 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올해 상반기에 종료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글썄, 저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 몇 대가 됐든 간에 바꿀 것 같으면 계속 바꾸는 게 낫지. 한 10만 대 20만 대 쌓여 있으니까 이제 하자, 그게 환경 측면에서 맞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 전문가는 아닌데 세제 입장에서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방금 위원장님이나 정일영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올해 자동차시장이 내수는 감소는 아니고 나름대로 받쳐 주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출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어찌저찌 버티겠지만 결국 그 밑에 있는 벤더사들, 부품업체들 이런 데들은 어쨌든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한 번 정도 더 개소세 혜택을 줘서 조금 더 소비진작을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관세 문제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노후자동차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만큼 세수감도 적은 거니까 이것을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수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10월까지 한 4% 늘어났습니다, 내수시장 자체는. 그래서 소비 동향도 좀 더 살펴보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로는 그 자체로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한마디만 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정일영 위원** 차관님, 첫 번째 논리보다는 두 번째 논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2025년 말에 끝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6월 말에 이미 종료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난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 빨리 노후차 바꾸자, 끝나기 전에. 그런 것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미 효과를 거뒀던……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딱 시간을 못박아서 이것 이때까지만 된다 그래서 노후차를 빨리 바꾸게 하자, 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 100만 원 한도 아니에요? 시한이 있으니까 빨리 바꾸자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새 차를 사야 되겠는데, 이 차가 오래 됐어. 한 15년, 십몇 년 돼서 바뀌야 되겠어, 그런데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좀 깎아 주면 바꿀 수도 있겠다, 우리 가족들이 다 새 차 타고 싶어 하는데. 조금 망설이다가 바꾸자 이런 효과가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5개월 하고 끝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끝났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3.5개월 이것 가지고서, 국민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 가지고 압박을 해 가지고 노후차를 교체하게 만들고 ‘이제 끝! 더 이상 연장 없어’ 이거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개소세 감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논리가 양자하고 똑같아.

그리고 노후차가 그건 또 있어요. 제가 10년도 넘게 타 보고 지금 차도 10년 가까이 되지만 갈수록 차 성능이 좋아지고 정비 이런 것도 잘되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들도 굉장히 좋아서 교체 비율이 떨어지는 그것도 영향은 주긴 줘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후차는 계속 많다, 길거리 가 보면 서 있는 차들 아직 있잖아요, 연기 폭폭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 교체하도록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는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노후차의 가장 큰 문제되는 것들이 화물자동차들입니다. 작은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실 길에 다니면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개소세가 면세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차 바꿀 때 돼서 바꾸려고 보니까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

음에 할 때까지 더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환경오염은 더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합시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이 세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화물차는 원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라고요? 왜 개소세 안 해 줘니까? 길에 다니면 화물차가 매년 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 길에 다닐 때 화물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제일 많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개소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예 처음부터 개소세 안 낸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개소세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화물차는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또 달라지네.

일단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235쪽의 전문위원 보고서 보면 경유자동차가 승용차만 해당된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정지은 경유자동차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이 있고 승용차만 지금 현재 해당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경유차 중에 승용차만?

○전문위원 정지은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경유화물차는 빼고?

○전문위원 정지은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조문에서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냥 ‘노후 경유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당연히 화물차량도 포함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분명하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정일영 위원님하고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찾아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관세법 분야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포괄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안이고요. 정태호 의원님 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한정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서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12종에 대한 의약품을 지금 기획재정부령으로 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 현황 부분입니다. 245페이지 부분이구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현재 관세 면제가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은 고가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 수입을 해야 되고 관련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의 면제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약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고, 정태호 의원님 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의약품을 선별해서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도입을 한다면 면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구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개정안 입법을 하게 된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관세법 제91조제4호에서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용 물품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제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특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추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이 잘 아시지요, 차관님보다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설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난번에도 비슷한 게 나와 있었구요.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약품, 우리나라에 없는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면제가 돼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그래서 열두 가지의 치료제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관세를 면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선우 의원님은 법으로 올리자는 표현이시고 정태호 의원님은 절차 규정을 넣어 가지고 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하자. 사실 취지는 거의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강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 보면 개념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세간에서 이게 그것인가? 그러면 어떤 약을 보면 이게 희귀·난치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에 여러 가지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게 그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집행이 아예 어려운 거고요.

세제실장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건보 대상이 되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보 대상이 아닌 것은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데 그러면 어느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에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시행규칙에 담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이렇게 법규에 적어 주시는 것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추천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올려서 기재부령으로 하신다는 것은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정태호 의원님 안인데요. 정태호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태호 위원 그런데 강선우 의원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발의해 놓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발의한 안은 현재 법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는 뭐냐 하면 우선 희귀질환이라고 병명은 이렇게 죽 나와 있겠지요. 여러 개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법적으로는 5개가 면세 대상이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2개……

○정태호 위원 참, 12개.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현재 정해져 있는 병명과 그다음에 의약품 외의 병이나 또 의약품을 계속 찾고 있거든. 그러면 해외에서도 정보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다가 요청하면 여기서 구입해서 환자한테 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관세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세를 제외해 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 경우가 상당히 고가의약품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약품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 과정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사려고 하니 너무 고가고 그러니 관세라도 좀 덜어 주면 그래도 뭔가 이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점을 강선우 의원도 그날 지난번 전체회의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낸 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구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걸 법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제 법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취지도 충분히 살려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정책관 최재영입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규정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4년의 경우에 83종의 품목이 있고, 요청환자 수가 1000명에 달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입니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법안을 일단 수용하고 기획재정부 규칙에서 현재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 내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태호 의원님 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규정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규칙에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하면 그게 수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것은 규정상 위임이 다 되게끔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냥 규칙에다가 추가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하고 같이 잘 정리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을 복지부장관이 추천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복지부장관이 통째로 추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약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하는 게 어떤 약이 될지 모른다는 데 지금 쟁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구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조문도 그렇지만 그래서 복지부랑 협의를 필요하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된다고 해 줘야 저희가 넣을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부가 된다는 것을 떠나서 개인들이 찾아서 하겠다는 걸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정태호 위원 제가 만든 문장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이미 정부가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관세가 면세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것은 다 해당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법에 넣기는 그렇고 체계상 보면 관세법 시행규칙에 그걸 담아 가지고 여기는 다 해 준다고 규정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분……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저는 관세정책관 최재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 관세국장입니다.

○**정일영 위원** 관세청에서 오신 거군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기재부 국장이지요.

○**정일영 위원** 아, 기재부의 담당 국장.

어쨌든 오픈돼 계시네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저분이 양자를 맡았어야 되는 건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양자를 맡았어야 되는데……

좋아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하고 실장님은 아직 80%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서로 입장이 약간 달라서 제가 어디서 오셨나 자꾸 물어봤는데 같은 기재부네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12개 리스트 만들어 놓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실제 필요한 의약품들. 그런데 그 센터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필요하다, 센터장이 공문만 보내면 바로 딱 해결이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가세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관세와 부가세를 정리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관세하고 부가세는 항상 같이 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의 지금 표현으로는 국장님이 담겠다고 한 걸 담는 데 대해서 약간의 위임이 제대로…… 법률에서 위임되는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태호 위원님의 오케이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말씀하신 논의 사항을 종합하면 기재부령으로 위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도 같이 채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 문구도 전문위원이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목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시행 성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관련 재정사업도 함께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하셨던 해외자원 개발투자 관련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관련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서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입자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부분만 할 거냐, 아니면 그것 아니고 바로 수입되는 것도 할 거냐, 차별화할 수 있냐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필요한 품목이면 할당관세로 감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도보다 할당관세를 통해서 필요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인데요.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윤영석 위원 이게 과거 노무현 전 정부 또 이명박 전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에 정부가 그 당시에 3조에서 한 5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1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을 통한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시점이고 공급망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 개발 자원들의 국내 반입이 상당히 많아요. 해외에서 개발된 것들 예를 들면 동 같은 경우는 한 74%, 니켈도 한 64%, 철도 한 62%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할당관세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단기제도 아닙니까, 6개월~1년 정도. 그래서 매년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매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아예 관세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광이나 정광, 채굴자원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에 필요한 리튬이나 이런 부분은 다 현재 정제나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현재는 다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자원 개발한 것을 국내로 들여올 때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세 면제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할당관세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뜻입니까, 말씀하신 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 부분이 조금 더……

○정일영 위원 차관님한테 물어봤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잘 내용을……

○정일영 위원 잘 몰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면 실장이 하는 게 답변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유리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뭔가 세금을 감면받게 되면 그 부분의 20%를 농특세를 붙이는 제도가 있는데 할당관세로 하게 되면 농특세까지도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할당관세로 하려면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매년 그것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부처의 건의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매년 할당 계획을……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왜냐하면 매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군산의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가 봤는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급망…… 희소금속류, 핵심광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새로운 경제, 신성장산업, 반도체 등등 다 리튬이나 희소·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어쨌든 건전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서 확보한 자원이라면 관세를 굳이 부과할 필요 없이 할당관세보다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게 해외자원 개발도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핵심광물 확보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관세……

지금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둘이 열심히 협의하시느라고 전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광물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는 차원인데요. 여기는 자원이라고 돼 있으니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광물로 좁힌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틈은 열어지거든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 그런데 아까 제가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린 말씀이 기재부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한 법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경우도 핵심광물로 국한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핵심광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하시면 안 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그 준비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광물 쪽……

○**정일영 위원** 검토하고 고민한다는 표현은 가능한 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보다는 발의하신 윤 위원님……

저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취지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는데 할당관세로 할 거냐, 법률에 명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당장 내년 1월 1일에 시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의하신 윤영석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신가요?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진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세제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거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취득한 것들이 국내로 유입될 때 어디까지 관세 면제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한 특수성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핵심광물이나 국가 희소·희귀 자원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별개의 가치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해서 과감하게 면제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자원이라는 부분에 다 포괄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정일영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일단 할당관세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예 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광물 위주로 해서 그 목록을 한번 작성해 가지고 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윤영석 위원님하고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시면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안건이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끝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과 관련해서 현행은 자기 명의대여와 타인 명의를 구분해서 자기 명의대여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타인 명의사용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성훈 의원님 안이 아직 대안반영폐기가 되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지만 현행으로 해서 작년에 논의를 하셔서 개정이 되었다는 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태호 의원님 안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의 경우는 관련 내용을 자기 명의대여와 타인 명의대여를 구분하지 않고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자기 명의대여 부분의 가벌성을 상향해서 동등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명의대여나 타인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인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해가 되고요. 관련 입법례를 보면 조세범처벌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 모두 일관되게 타인 명의대여와 자기 명의대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타인 명의는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명의대여도 같은 수준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요. 다른 법, 전문위원 검토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조세범처벌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타인 명의하고 자기 명의의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랑 저희는 맞춘 건데요. 자기 명의를 맞추는 거는 이 체계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 현행 유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왜 자기 명의를 현행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세법 집행 질서를 교란하려고 하는 고의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냐 과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명의를 쓰느냐 타인 명의를 쓰느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고의로 했으면 그게 서로 공범으로서 처벌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서 범죄를 하게 했느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내가 범죄를 했느냐, 둘 다 똑같은 거다. 이게 실제 일반적인 공모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량을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일반적인 벌금형 관련해서 1년에 1000만 원 이거는 통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즉 현행법이 타인 명의에 대해서 2년 2000만 원이면 그것을 똑같이 자기 명의도 2년 2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아까 제안이 일반적 기준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법하고 차별이 너무 되어서도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검토를 기재부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혹시 세법 말고 다른 국가, 다른 법률에도 이렇게 2개 구분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약사들도 그렇고 명의 대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전문위원 정지은 260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관세사법하고 철도안전법 등에서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잠깐 먼저 좀……

○정일영 위원 하세요.

○오기형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이것을 구분하려면 고의나 과실이냐로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이외에는 다 고의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행위·행태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거냐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거냐는 형량이 다릅니다. 그거는 사회적 피해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피해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똑같은 거면 같은 형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정의 취지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탁송품·우편물 수입,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마약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해당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걱정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불법 총기류, 마약 이런 것을 직구, 탁송품, 특송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자기가 범법자로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입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받고 내 이름을 빌려줘서 그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마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총기류 이런 안 좋은 것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한 2~3년 전에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범죄집단,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범죄집단이 남의 직구번호? 하여튼 그런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많이 수입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 가지고 범죄·마약 이런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명의대여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타인 명의사용이나 사실 오십보백보 다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형량을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고, 다른 법에 어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한 법의 원칙…… 변호사신데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법에서는 처벌을 정태호 의원님 안대로 강화하고 그리고 타인 명의사용이든 자기 명의대여든 형량을 똑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역시 변호사 출신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차등이 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차등을 하는 이유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어쨌든 탁송물이나 우편물을 최종 귀속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를 써서 내가 그 물건을, 금지된 물품을 내가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고, 자기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물론 거기에 가담은 하지만 탁송물의 최종 귀속 주체는 아니거든요, 명의만 대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 양태에 어쨌든 차등이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조세범처벌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있듯이 명의를 대여해서 실제로 위험한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그런 취지에서 기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 간 정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법제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다 있는데 여기 2년에 3000만 원 돼 있는 부분도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2년에 2000만 원 돼야 되는 게, 보통의 법적 정합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성훈 의원안이 아직 우리 소위에 계류돼 있는 모양인데 대안반영으로 처리를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가격신고와 관련된 허위·미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세액탈루, 부당이득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신고와 관련된 허위·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로 관련 처벌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세액탈루나 부당이득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허위·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결정자료 수취를 통해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하면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세법령의 가격신고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 측 의견도 같이 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가격신고를 미신고나 허위신고 할 때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라는 규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형벌 규정을 만들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는, 작년의 통계를 보면 가격신고를 한 사람이 한 488만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1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488

만 건 중에 1만 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87만 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현장에서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 관세행정상 뭔가 조금 개선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뭔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관세청하고 의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결정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청하고 저희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관세청에 의견을 물어보세요, 집행 가능한지. 책상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은 관세청 의견 받아 보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행정심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하는 차원에서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서류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출서류 확대라든지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 지금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또한 정부 측 의견이 필요하고 또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같이 발의가 되어 있다는 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누가 잘 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스톱 행정심판 기관 통합 논의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보류된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부터 먼저 하고 이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원스톱 통합 논의는 어디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법제처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게 아마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래서 조세나 노동 분야, 토지 분야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체가 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논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권이 다 끝난 건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4권까지 끝이 났습니다. 15권이 남았으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하려

고 하다가 15권 안건은 내년 1월 1일 날 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세율이라든지 조세지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12월 중이나 늦더라도 1월 초에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15권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기형 위원 12월 중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최대한 빨리해야지요. 그런데 계속 진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일곱 번이나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법안이 작년에 312건, 이번에는 536건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무난히 잘 진행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이형일 차관 이하 공무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역대급의 법안 수를 우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내일 소소위 열어서 최종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전체회의를 하는데 시간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지역에는 인천이니까 안 가셔도 되는 거고 지역에 안 가시면 돼요, 금요일 날 전체회의 있으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윤영석 이소영 정일영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청가 위원(1인)

유상범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관세정책관 최재영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양재훈